

第245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4號

國會事務處

2004年2月9日(月) 午後2時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1. 監査院法中改正法律案
2.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3.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4. 고도(古都)보존및정비에관한특별법안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대안)
6.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7. 入養促進및節次에 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8. 障礙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
9.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
10.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11.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범공조조약비준동의안
12.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13.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가입동의안
14.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
15.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
16.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에관한추가적정서비준동의안
17. 대한민국과화학무기금지기구간의화학무기금지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18.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계속)
19.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20.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대안)
21.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안
22.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
23. 국회의원(서청원)석방요구결의안

附議된案件

- o 의원신상발언 3
- 1. 監査院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5
- 2.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조웅규 의원 대표발의)(조웅규·권철현·윤경식·박희태·김부겸·신현태·장광근·도종이·이정일·이인제·이재선·김용학·박주천·한승수·임인배·이원형·안경률·이상득·정의화·양정규·이원창·김윤식·안상수·강창성·박명환·홍사덕·이운성·김황식·박세환·심재철·박진·김종하·김덕룡·김정숙·김운용·최병렬·이인기·유홍수·김성조·박원홍·원희룡·박양수·서병수·이미경·박시균·김종호·이성현·이한동·주진우·권기술·박승국·김경천·서청원·이용삼·홍문종 의원 발의) 5

o	의사일정변경동의의견(유용태 의원 외 60인 발의)	6
22.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유용태 의원 외 60인 발의)	6
3.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심규철 의원 발의)(심규철 의원 외 34인 발의)	7
o	의사일정변경동의의견(박종희 · 맹형규 · 이승철 · 권오을 · 조용규 · 이재오 · 박세환 · 이상희 · 권기술 · 강창희 · 이규택 · 윤두환 · 심재철 · 심규철 · 신현대 · 임인배 · 권태망 · 박혁규 · 김진재 · 박시균 · 김학송 · 안경률 의원 서면동의)	8
23.	국회의원(서청원)석방요구결의안(박종희 · 임인배 · 박혁규 · 권태망 · 심재철 · 윤두환 · 이해구 · 김락기 · 이양희 · 박원홍 · 김용학 · 심규철 · 신현대 · 김동욱 · 김황식 · 서상섭 · 김진재 · 박시균 · 김용균 · 전용학 · 이규택 · 이승철 · 맹형규 · 전용원 · 정문화 · 이상희 · 황우여 · 권오을 · 서정화 · 백승홍 · 윤경식 의원 발의)	9
4.	고도(古都)보존및정비에관한특별법안(김일운 의원 대표발의)(김일운 · 김학원 · 정진석 · 이협 · 임진출 · 강신성일 · 고흥길 · 심규철 · 정병국 · 박종웅 · 남경필 · 신영균 · 현경대 · 신기남 · 강성구 · 정재문 의원 외 143인 발의)	1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1
6.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김홍신 · 유시민 · 김명섭 · 김성순 · 김부겸 · 안영근 · 김경천 · 조성준 · 심재권 · 이우재 의원 발의)	11
7.	入養促進및節次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김홍신 · 심규철 · 정병국 · 김부겸 · 김원웅 · 윤여준 · 심재권 · 원희룡 · 김희선 · 오세훈 · 권기술 · 송영길 · 김용학 · 신기남 · 김성순 · 이종걸 · 박인상 · 김경천 · 김태홍 의원 외 1인 발의)	11
8.	障碍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유재건 의원 대표발의)(유재건 · 김근태 · 김성호 · 김영환 · 김원기 · 박양수 · 설훈 · 송영길 · 오세훈 · 이근진 · 이인제 · 이창복 · 임종석 · 조용규 · 김운용 의원 발의)	11
9.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이강두 의원 대표발의)(이강두 · 이한구 · 이원형 의원 외 145인 발의)	12
10.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김태식 의원 대표발의)(김태식 · 최명현 · 정균환 · 문희상 · 추미애 · 김덕규 · 장재식 · 정동채 · 김충조 · 박상규 · 박병석 · 배기선 · 박주선 · 이창복 · 유용태 · 이정일 · 이낙연 · 김기재 · 한화갑 · 최영희 · 박양수 · 이재정 · 배기운 · 유재규 · 박상희 · 송석찬 · 정철기 · 고진부 · 강봉균 · 이강래 · 조재환 · 최선영 · 정장선 · 광치영 · 장영달 · 이훈평 · 김효석 · 정세균 · 조배숙 · 이희규 · 전갑길 · 김영진 · 김영환 · 최재승 · 김상현 · 이근진 · 장성원 · 이미경 · 문석호 · 김옥두 · 조한천 · 이용삼 · 이종걸 · 최용규 · 허운나 · 김명섭 · 김운용 · 김태홍 · 김경천 · 설훈 · 강운태 · 안동선 · 남궁석 · 설송웅 · 천용택 · 송영길 · 천정배 · 조성준 · 김홍일 · 유재건 · 김방림 · 김성순 · 강성구 · 김윤식 · 송훈석 · 송영진 · 김화중 · 이협 · 김영배 · 함승희 · 정동영 · 김근태 · 정범구 · 이호웅 · 신기남 · 이윤수 · 박종우 · 윤철상 · 심재권 · 하순봉 · 박희태 · 양정규 · 주진우 · 권오을 · 서병수 · 김동욱 · 오장섭 · 이우재 · 박종근 · 김원웅 · 권기술 · 현경대 · 정창화 · 이상배 · 유흥수 · 윤영탁 · 김학송 · 박명환 · 권철현 · 정문화 · 김찬우 · 이재오 · 윤한도 · 안택수 · 김락기 · 이양희 · 신현대 · 김부겸 · 이재선 · 이부영 · 김성조 · 박세환 · 이상희 · 황우여 · 김광원 · 김희선 · 강창성 · 백승홍 · 이승철 · 박진 · 오세훈 · 박주천 · 손희정 · 정의화 · 엄호성 · 이주영 · 황승민 · 박승국 · 이방호 · 김병호 · 안경률 · 강신성일 · 심재철 · 이원창 · 이원형 · 나오연 · 박시균 · 원희룡 · 김종하 · 정형근 · 고흥길 · 이인기 · 신경식 · 박헌기 · 조정무 · 권영세 · 강인섭 · 김일운 · 서정화 · 신영국 · 이강두 · 임진출 · 김홍신 의원 발의)	13
11.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15
12.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15

13.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가입동의안	15
14.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	16
15.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	16
16.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에관한추가의원서비준동의안	16
17. 대한민국과화학무기금지기구간의화학무기금지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16
18.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계속)	18
o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에대한무기명투표실시요구의건(홍사덕·김근태 의원 외 54인 발의)	44
o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에대한기명투표실시요구의건(이정일 의원 외 57인 발의)	45

(16시15분 개의)

- 議長 朴寬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局長 金成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원신상발언

- 議長 朴寬用 지금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韓和甲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和甲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당내 경선자금에 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관용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저는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검찰의 저에 대한 수사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편파수사입니다.

7명이 나와서 당내 경선을 했는데 끝까지 간 사람들이 실정법을 어겼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그만둔 저의 당내 경선자금만을 수사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편파수사입니다.

열여섯 번의 당내 경선 중에 저는 네 번까지 참여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 사람은 수사하지 않고 도중에 그만둔 저

의 경우만 수사한다는 것이 편파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저에 대한 이번 수사는 표적수사임이 틀림없습니다.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검찰은 끊임없이 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왔으며, 더구나 당내 경선자금에 대해서는 작년 10월과 11월에 그 전모를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당을 함께하자는 제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제의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탈당을 하거나 계보마저 변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이나 유신 때에도 세 번이나 감옥살이를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했지만 단 한번도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저의 소신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당내 경선자금에 관한 수사는 군사정권이나 유신독재 때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그만둔 저의 당내 경선자금만을 문제 삼는 것이 표적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구나 제가 지방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누가 돈을 지불하느냐는 것까지 정보기관에서 물어볼 정도였으니 그 이상 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의 심경의 일단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검찰에게 말씀드립니다. 법 적용의 형평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요구합니다. 당내 경선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저는 검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깨끗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해 왔으나,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높은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 점 깊이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당내 경선에 관해서 문제 될 것이 있다면 모든 도덕적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용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당내 경선비용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당내 경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李祥羲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李祥羲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정치가 국민의 정치에 바람직한 방향 그런 부분과 제가 정치에서 정들었던 지금 한나라당 탈당이라는 부분이 무언가 그래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중국은 과학교육으로 나라를 일으켜야겠다고 ‘과교흥국(科教興國)’입니다. 일본은 ‘지재권 입국(知財權 立國)’입니다. 특히, 실용신안, 이런 것으로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지재권 입국입니다. 부시는 ‘나노·바이오연구개발법’ 해서 4조 2000억 투입을 해서 나라 경제를 살려야겠다고 합니다. 국방도 인력이 아니고 이제는 국방기술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서민경제 참 어렵습니다. 하루에 10개의 중소기업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조차도 기술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임금이 싼 중국으로 옮기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정치권에서 정말 공감대가 적은 과학기술을 고집스럽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산업법이다, 해양개발기본법이다, 대체에너지법이다, 생명공학육성법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근간 입법을 제가 의원입법으로 제정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

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래서 한나라당 경선에 과학대통령이라는 기치를 들고 제가 사재를 털어서 2억의 등록금을 내고 나갔습니다.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에는 ‘이공계 위기다’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면서 그런 점에서 저는 가능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정치의 새로운 개혁에 반영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 나름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저는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정든 한나라당에 탈당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저의 탈당이 단순히 공천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탈당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점은 제가 정치 20년을 어떻게 해 왔느냐 하는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의 탈당이 우리 정치 전체에 그래도 진정으로 국민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제 이 부분에 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많은 사람을 영입하는 쪽으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정치는 이렇든 저렇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잘 살게 하는 것은 이공계가 죽으면서 절대 잘살게 할 수 없습니다. 모래 1t이 1만 원 하지만 기술로 반도체를 만들면 1000억입니다.

그런 점에서 존경해 마지않는 의원님들, 오늘 저의 신상발언은 단순히 저의 신상발언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래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우리 정치 쪽에서 제가 한계를 느끼면서 했던 이 안타까운 부분을 깊이 이해하셔 가지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저 대신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국가 기술공황의 예방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을 제안해 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마는, 법사위에서 제가 제안자로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사무적인 질의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다 이 나라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미래를 향한 사고, 창조적 사고 그리고 합리적 사고, 특히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쪼록 항상 그런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는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면서 훌륭한 정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監査院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조용규 의원 대표발의)(조용규·권

철현·윤경식·박희태·김부겸·신현대·장광근·도종이·이정일·이인제·이재선·김용학·박주천·한승수·임인배·이원형·안경률·이상득·정의화·양정규·이원창·김윤식·안상수·강창성·박명환·홍사덕·이윤성·김황식·박세환·심재철·박진·김종하·김덕룡·김정숙·김운용·최병렬·이인기·유홍수·김성조·박원홍·원희룡·박양수·서병수·이미경·박시균·김종호·이성현·이한동·주진우·권기술·박승국·김경천·서청원·이용삼·홍문중 의원 발의)

(16시26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최용규 의원 나오셔서 2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최용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최용규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 및 曹雄奎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원이 경제 관련 국가정책에 대한 감사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5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한 자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감사의 상대방 및 관계인 등이 서면 또는 구술 외에 전자문서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견진술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 이 법률안의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재외동포에서 제외한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에 따라 동 규정을 결정문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무국적 동포를 이 법의 적용대상인 재외동포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에서는 재외동포기본법안을 인용하여 재외동포를 정의하고 있으나, 동 법안은 현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재외동포의 개념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의 범위에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나, 무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현 거주국으로부터 출국 자체가 매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 제10조제5항에서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취업 기타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외동포체류자격자의 활동범위와 관련해서는 현행 출입국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그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그 외 별도의 제한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監査院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법제사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전자투표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 만장일치로 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4인, 만장일치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변경동의의견**(유용태 의원 외 60인 발의)

(16시33분)

○ **議長 朴寬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劉容泰 의원 외 60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이 안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이희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규 의원** 새천년민주당 소속 이희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의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韓和甲 의원에 대한 편파·표적 수사를 멈추고, 2002년 대선후보 경선을 끝까지 치렀던 盧武鉉 대통령과 정동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공정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2004년 2월 9일 제245회 국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을 추가하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처리 직후 제3항으로 상정하여 심의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朴寬用** 이 안건은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의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김부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로론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7인, 기권 4인으로 劉容泰 의원 외 60인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 안건이 이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22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유용태 의원 외 60인 발의)

(16시37분)

○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22항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安相賢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法制司法委員長代理 安相賢** 새천년민주당 安相賢 의원입니다.

새천년민주당에서 제출한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검찰은 형평과정의의 원칙에 따라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盧武鉉 대통령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야당 의원인 韓和甲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편파·표적 수사입니다.

작금의 검찰은 승자의 큰 허물에 눈감고 패자의 작은 잘못에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검찰은 SK를 수사하던 도중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韓和甲 의원을 조사했다, 다른 후보는 수사

단서가 없기 때문에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궁색하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 조사 중 증거나 사실이 현출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세평, 풍문, 신문기사나 언론보도도 얼마든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현재 국민적 의혹 대상인 불법 정치자금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공정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을 수호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검찰 본연의 모습입니다.

경선자금의 수사는 盧武鉉 대통령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2003년 7월 21일 盧武鉉 대통령은 정치자금에 대한 특별 기자회견에서 “경선자금은 사실 밝히기가 곤란하다. 실제 경선에 들어가는 홍보·기획 비용은 합법의 틀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밝힐 수가 없다. 경선자금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폐기해 남아 있지 않다”라고 말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증거를 은폐·인멸하였음을 자백하였습니다.

정동영 의원 역시 2000년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權魯甲 민주당 고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 불응하여 사법질서를 망가뜨린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경선주자였던 김근태 의원은 2000년 경선자금에 관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고백을 하여 기소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민주당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도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제주, 울산, 2개 지역만을 마치고 경선에서 자진 사퇴한 김근태 의원과 비교할 때 16개 시·도 지역을 완주한 盧武鉉 대통령과 정동영 의원이 적어도 김근태 의원보다 훨씬 많은 경선자금을 사용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경선과 관련하여 정동영 의원은 16대 국회 4년 임기 중 세 번의 경선을 치른 최다 경선주자였습니다. 경선자금 수사를 한다면 1차 수사는 당연히 정동영 의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선 당시 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희정 씨가 대우건설로부터 영수증 처리 없이 5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최근 검찰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자칭 여당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혐의가 드러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외면만 한다면 이를 과연 형평과 정의에 기반을 둔 국민의 검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민주당은 韓和甲 의원에 대한 편파·표적수사에 앞서 2002년 대선 후보 경선을 끝까지 치렀던 盧武鉉 대통령과 정동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공정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결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끝에 실음)

○議長 朴寬用 그러면 토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173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심규철 의원 발의)(심규철 의원 외 34인 발의)

(16시44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3항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韓忠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國防委員長代理 韓忠洙 새천년민주당 韓忠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韓忠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심규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규명함과 아울러 관련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충청북도지사 소속하에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각각 두고, 위원회는 2년 이내에 진상조사를 완료하며, 정부는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의한 조사의 범위를 기존 공동조사에서 유보된 희생자 진위 여부 및 희생자 수에 대한 심사로 한정하고, 그에 따라 안 제명 및 본문 중 진상조사와 관련된 용어를 ‘희생자심사’로 통일하였으며, 희생자심사 또한 기존 공동조사 결과에 기초하되 1년의 기간 내에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본 법률의 집행 소관 부처를 선정 시 유사한 취지의 법률인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의 집행부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 본 법률이 집행 소관 부처를 잘못 선정하는 문제로 인해 실효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을 붙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국방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196인 중 찬성 196인, 만장일치로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변경동의의견(박종희·맹형규·이승철·권오을·조용규·이재오·박세환·이상희·권기술·강창희·이규택·윤두환·심재철·심규철·신현태·임인배·권태망·박혁규·김진재·박시균·김학송·안경률 의원 서면동의)

(16시48분)

○議長 朴寬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박종희 의원 등 22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이 안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박종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희 의원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희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서청원)석방요구결의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변경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저를 대표발의자로 국회의원(서청원)석방요구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교섭단체 간 협의에 의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의사일정에서 제외된 이유는 최근 구속된 수많은 동료 의원들과의 형평성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徐淸源 의원 이외에 다른 의원들 중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徐淸源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부작용이 사실을 근거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徐淸源 의원을 구속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 해외 도피 중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보냈다는 팩스 진술서 한 장이라는 사실이 여타 다른 사건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유·무죄를 논하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특수한 사건에서의 인신구속의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국회가 스스로의 존엄과 권위를 한 발자국 후퇴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만신창이로 만들려는 권력은 열 발자국 앞으로 다가와 의원 한 분 한 분의 목에 칼을 겨눌 것입니다.

부디 국회의원(서청원)석방요구결의안이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심도 있게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무리한 수사, 구속 남발의 관행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어 주고 의회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은 빠른 시일 안에, 바로 다음 안건 뒤에 넣어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이 동의안 역시 토론 없이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189인 중 찬성 155인, 반대 29인, 기권 5인으로서 박종희 의원 등 22인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국회의원(서청원)석방요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23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23. 국회의원(서청원)석방요구결의안(박종희·

- 임인배·박혁규·권태망·심재철·윤두환·
 - 이해구·김락기·이양희·박원홍·김용학·
 - 심규철·신현태·김동욱·김황식·서상섭·
 - 김진재·박시균·김용균·전용학·이규택·
 - 이승철·맹형규·전용원·정문화·이상희·
 - 황우여·권오을·서정화·백승홍·윤경식
- 의원 발의)

(16시52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23항 국회의원(서청원)석방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희 의원 박종희 의원입니다.

徐淸源 의원은 2004년 1월 28일 검찰에 의해서 전격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유는 “徐淸源 의원이 2002년 11월 초순경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으로 부터 국민주택채권 1000만 원권 100매, 10억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아서 이를 수수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徐淸源 의원은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이유가 국민주택채권 10억 원을 김모라는 사람에게서 받았다 하는 진술이었습디만,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모 사장이라는 한화그룹 계열사 사장으로 부터 채권을 받았다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소환을 했습니다만, 徐淸源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두를 해서 “그 시각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만났다. 그러면 김승연 회장이 내게 채권을 줬다는 말이나?” 하고 검찰에 주장을 했습니다. 당황한 검찰이 다시 김모 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준 것이 아니고 김승연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라는 진술을 받고 다시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으로 부터 받았다는 팩스를 하나 근거로 해서 그다음 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바로 전격 구속한 것입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팩스 가지고 구속을 시킨 전례가 없습니다. 미 대사관의 확인도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약점이 많은 기업의 기업주를 협박을 해서 구속을 시키는 이런 것은 어떤 한 개인이라도 인권침해 차원에서 우리 국회가 그 부분에 대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하물며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입니다.

徐 의원은 구속의 부당성을 누누이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어느 당 소속 의원이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도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약점이 많은 기업의 회장을 협박해서 진술서를 받아 내고 그리고 전격 구속한 것은 우리 국회의 권위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대선자금 문제에 파문혀서 어느 한 국회의원의 인권이 이렇게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에 회기 중 석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형법의 원칙에 맞추어서 이 결의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와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검찰 공화국의 이 망령을 국회가 스스로 막아 내지 못한다면, 권력의 칼끝은 성큼 앞으로 다가와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목을 겨눌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끝에 실음)

○議長 朴寬用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혁규 의원, 嚴虎聲 의원, 李仁基 의원, 윤두환 의원, 梁承富 의원, 黃昌柱 의원, 박병석 의원, 정장선 의원, 이상 여덟 분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의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局長 金成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국회의원(서청원)석방요구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6시58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寬用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17시1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명패함을 먼저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2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잠시 후에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밖에 계신 의원님들 전부 다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0표 중 가 158표, 부 60표, 기권 2표로 국회의원(서청원)석방요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도(古都)보존및정비에관한특별법안(김일운 의원 대표발의)(김일운·김학원·정진석·이협·임진출·강신성일·고홍길·심규철·정병국·박종웅·남경필·신영균·현경대·신기남·강성구·정재문 의원 외 143인 발의)
(17시16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4항 고도(古都)보존및정비에관한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일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김일운 문화관광위원회 김일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古都)보존및정비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경주, 부여, 공주, 익산과 같이 고대 국가 도움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옛도시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으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적지나 문화재의 개별적 보호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서 역사적 문화환경의 포괄적 보호·전승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적의 보존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역사·문화적 자산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과 아울러 민족

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朴寬用 의장, 趙富英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법안의 제목 및 본문에서 “정비” 및 “사유재산권 보호” 용어는 고도에 대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고도”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추가지정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도보존계획”의 수립 주체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지역 실정에 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하였고, 고도의 문화유적을 보존, 정비하는 보존사업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재 발굴에 관한 조항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건축 불허 등 행위제한 시에는 토지 등의 매수청구권, 이주대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 조항은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고도(古都)보존및정비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副議長 趙富英 그러면 고도(古都)보존및정비에관한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고도(古都)보존및정비에관한특별법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김홍신·유시민·김명섭·김성순·김부겸·안영근·김경천·조성준·심재권·이우재 의원 발의)

7. 入養促進및節次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김홍신·심규철·정병국·김부겸·김원웅·윤여준·심재권·원희룡·김희선·오세훈·권기술·송영길·김용학·신기남·김성순·이종걸·박인상·김경천·김태홍 의원 외 1인 발의)

8. 障礙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유재건 의원 대표발의)(유재건·김근태·김성호·김영환·김원기·박양수·설훈·송영길·오세훈·이근진·이인제·이창복·임종석·조응규·김운용 의원 발의)

(17시22분)

○副議長 趙富英 의사일정 제5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이원형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실화하였고, 둘째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수급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정확한 실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계측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아동이 국내에 입양된 경우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로 인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요보호아동 중 장애아동이 입양되었을 경우

에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한다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구별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입양된 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당해 입양아동이 부담하여야 하는 의료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법을 개정하여 반영하였기 때문에 개정 내용은 삭제하되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의료비, 기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현행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외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入養促進및절차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障礙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보건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副議長 趙富英 그러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희선 의원님은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9인 중 찬성 209인으로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202인으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202인으로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이강두 의원 대표발의)(이강두·이한구·이원형 의원 외 145인 발의)

(17시31분)

○副議長 趙富英 의사일정 제9항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李康斗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勞動委員長代理 李康斗 환경노동위원회 李康斗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이전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과 아울러 고급인력의 3D업종 등 취업 기피 현상이 팽배하고 있고, 또한 최근 5년간 대졸자가 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팬츠은 일자리는 32만 6000개나 감소하는 등 청년실업이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대백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부 창출의 원천인 청년들의 실업으로 인하여 고급인력이 낭비되고 있고, 경제활동참여의 저조로 경제 성장의 장애 요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가 청년근로자의 취업 기회와 능력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투자기관과 민간 사업자는 청년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고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향후 5년간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공공 분야 근무자의 채용 및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의 청년근로자 고용 및 직업훈련을 늘려 나가기 위하여 시설·환경 개선 비용 및 채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체의 공동훈련센터의 설치·운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나아가 이와는 별도로 청년근로자 실업해소를 위한 전담 행정조직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청년근로자 취업실태를 조사·공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을 통합한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는 등 청년실업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투자기관 등의 채용 확대와 관련하여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한 것을 100분의 3 이상씩으로 완화하고, 강행적 규정의 성격이 있는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 기회 부여에 관한 규정을 임의적 규정으로 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

○副議長 趙富英 그러면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나오면 의원은 추가 찬성입니까?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81인, 반대 9인, 기권 8인으로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김태식 의원 대표발의)(김태식·최명현·정균환·문희상·추미애·김덕규·장재식·정동채·김충조·박상규·박병석·배기선·박주선·이창복·유용태·이정일·이낙연·김기재·한화갑·최영희·박양수·이재정·배기운·유재규·박상희·송석찬·정철기·고진부·강봉균·이강래·조재환·최선영·정장선·곽치영·장영달·이훈평·김효석·정세균·조배숙·이희규·전갑길·김영진·김영환·최재승·김상현·이근진·장성원·이미경·문석호·김옥두·조한천·이용삼·이종걸·최용규·허운나·김명섭·김운용·김태홍·김경천·설훈·강운태·안동선·남궁석·설송웅·천용택·송영길·천정배·조성

준·김홍일·유재건·김방림·김성순·강성구·김윤식·송훈석·송영진·김화중·이협·김영배·함승희·정동영·김근태·정범구·이호웅·신기남·이운수·박종우·윤철상·심재권·하순봉·박희태·양정규·주진우·권오을·서병수·김동욱·오장섭·이우재·박종근·김원웅·권기술·현경대·정창화·이상배·유홍수·윤영탁·김학송·박명환·권철현·정문화·김찬우·이재오·윤한도·안택수·김락기·이양희·신현태·김부겸·이재선·이부영·김성조·박세환·이상희·황우여·김광원·김희선·강창성·백승홍·이승철·박진·오세훈·박주천·손희정·정의화·엄호성·이주영·황승민·박승국·이방호·김병호·안경률·강신성일·심재철·이원창·이원형·나오연·박시균·원희룡·김종하·정형근·고홍길·이인기·신경식·박헌기·조정무·권영세·강인섭·김일윤·서정화·신영국·이강두·임진출·김홍신 의원 발의)

(17시36분)

○副議長 趙富英 의사일정 제10항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의 尹鐵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過去事實真相糾明에관한特別委員長代理 尹鐵相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 尹鐵相 의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894년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반봉건, 반외세의 근대 민족운동이자 항일 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으나 명예로운 예우를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정부기록보존소에는 비적 또는 비도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 많은 시련을 겪어 왔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무총리 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

니다.

또한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유족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기념탑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형제자매의 자녀나 손자녀로 규정한 유족의 범위를 유사 입법례에 준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률 제명을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으로, 또 법안의 내용 중 “동학농민혁명군”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일체의 국권침탈로부터”를 “일체의 침략으로부터”로 수정하는 등 체계 및 자구 정리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동 법률안에 대하여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심사 보고서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副議長 趙富英 그러면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8인 중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3인으로서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은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12.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13.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가입동의안

(17시42분)

○副議長 趙富英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가입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曹雄奎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統一外交通商委員長代理 曹雄奎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曹雄奎 의원입니다.

2003년 5월 31일 정부로부터 각각 제출된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및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과 2003년 8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가입동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동의안은 대상 조약 및 협약이 입법사항 및 주권 제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2004년 2월 5일 및 2월 9일 제245회 임시국회 제1차,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및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정보·서류·증거물의 제공 등에 대하여 상호협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인 인도조약은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가입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은 국제물품거래에 관한 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기업이 국제물품거래에 있어 준거법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겪는 법률적 애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2004년 2월 현재 이 협약의 당사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 미국 등을 포함한 62개국에 달하는 등 이 물품매매협약이 국제물품거래에 있어 그 준거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므로 그 가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협약은 우리 민법 및 상법의 관련 규정과 상당 부분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는 법관이나 국제물품거래를 하는 기업인들 관련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가입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副議長 趙富英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6인 중 찬성 196인으로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가입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가입동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4.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 비준동의안
 - 15.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 비준동의안
 - 16.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에관한추가의정서비준동의안
 - 17. 대한민국과화학무기금지기구간의화학무기금지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 (17시50분)

○副議長 趙富英 의사일정 제14항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에관한추가의정서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대한민국과화학무기금지기구간의화학무기금지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이창복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이창복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창복 의원입니다.

2003년 8월 9일 정부로부터 각각 제출된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과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

동의안, 2003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에관한추가의정서비준동의안, 2000년 9월 28일 제출된 대한민국과화학무기금지기구간의화학무기금지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한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4건의 동의안은 대상 협약 등이 입법 사항 및 주권 제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약칭하여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 ‘폭탄테러억제협약’ 및 ‘안전조치협정추가의정서’ 등 3건에 대한 비준동의안은 2004년 2월 5일 및 2월 9일 제245회 임시국회 제1차 및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고, ‘화학무기금지기구의 특권면제협정’은 2000년 12월 5일 제215회 정기국회 제11차 위원회 회의와 2004년 2월 9일 제245회 임시국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 및 폭탄테러억제협약에 대해 보고드리면, 이 협약들은 테러행위에 자금을 제공·모금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또는 그 교사행위 등과 국가 또는 정부시설 등에 폭발 무기 또는 장치를 전달·배치·방출 또는 폭발시킨 행위, 그 미수행위 및 공범행위 등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당사국은 동 범죄행위 및 이에 대한 형벌을 자국의 국내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趙富英 부의장, 朴寬用 의장과 사회교대)

2003년 12월 말 현재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의 당사국은 104개국, 폭탄테러억제협약의 당사국은 115개국 등 국제사회가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에 동참하고, 특히 이라크 파병 움직임과 우리 국민의 활발한 해외 진출 등으로 인하여 공관원, 교민, 여행객 등 우리 국민이 국제테러단체 등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점증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도 2002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섬 나이트클럽 폭탄테러 사건에서와 같이 우리 국민이 국제테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우리 위원회는 감안하여 이 같은 반테러 관련 국제협약에 대해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조치협정추가의정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추가의정서는 우리 정부에게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개발 활동 및 향후 계획, 국내 우라늄광산 현황, 핵원료물질 등에 관한 정보를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 활동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및 사찰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설비 기준으로 세계 제9위에 해당하는 원자력 활동이 매우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고, 원자력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 추가의정서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국내 원자력계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범위의 확대 등으로 인해 일부 업무 부담의 증가가 예상될 뿐 아니라 원자력과 관련된 산업적·상업적 비밀의 보호 필요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므로 향후 보조약정이나 접근통제약정의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학무기금지기구의 특권·면제협정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화학무기금지기구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여 동 기구가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처분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0년 당시에는 이 특권·면제협정에 대해 미국 중국 등 화학무기금지협정의 주요 당사국들이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의 체결 동향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의결을 보류하였으나, 최근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협정 체결을 위해 문안 협상을 진행 중이고, 화학무기금지기구 주관의 국제회의 및 지역사무소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가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에관한추가의정서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한민국과화학무기금지기구간의화학무기금지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177인 중 찬성 177인, 만장일치로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

투표를 종료…… 박창달 의원 빨리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193인 중 찬성 193인, 만장일치로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에관한추가의정서비준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5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 관한조약에 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에 관한추가정서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화학무기금지기구간의화학무기금지기구의특권과면제에 관한협정비준동의안의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 만장일치로 대한민국과화학무기금지기구간의화학무기금지기구의특권과면제에 관한협정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계속)

(18시03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8항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8일 제244회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각각 1인씩 들은 후 토론 종결을 선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회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토론을 계속한 후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尹漢道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으로 처리할 안건이 많고, 발언하실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녁 시간을 별도로 두면 관례로 비추어 보아서 성원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토론이 여러 사람이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 기간 동안 한 3, 40분 동안에 식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漢道 議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의령·함안 출신 尹漢道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칠레 FTA 국회 비준 철회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은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이요, 농촌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농업은 거대한 개방의 물결 앞에 한 치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무차별적인 수입 개방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산물 값에 극심한 허탈감과 분노에 싸인 채 생존권마저 포기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농민들은 또 한번 피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칠레 FTA 처리는 의지할 데 없는 우리 400만 농민들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 이익을 위해 어떤 나라와, 또 어떤 조건으로 협정을 체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과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농업이 취약한 싱가포르와 FTA를 먼저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칠레와는 협정 체결도 하지 않으면서도 칠레 국내의 일본 자동차 시장점유율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또 미국은 캐나다와의 협정에서 58개 품목을 예외로 두었고, 호주와의 협정에서도 농산물 예외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유수의 선진국들까지도 자국의 농업과 식량을 지키는 데는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불과 30%도 안 되고, 그것도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이 5%에도 밑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업대국 칠레와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민족의 생명줄을 팔아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심지어는 기준을 안 하면 국제적인 신뢰 추락까지 운운하면서 정부는 여론을 조작하고 협박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액 89억 달러 중 칠레는 5%인 4억 5000만 달러에 불과하고, 수입은 7억 5000만 달러로 오히려 3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이래도 칠레를 반드시 확보해야 할 시장이라고 여론을 호

도하는 것은 바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잘못된 협정을 따지고, 비준을 거부하고 다시 협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WTO/DD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 농업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는 너무나 좁아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현상입니다.

저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협상 상대국 선정부터 그 결과까지 잘못된 한·칠레 FTA 국회 비준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비준을 한다 해도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WTO/DDA 농업협상이 끝난 후 그때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처리해야 할 것은 FTA 비준이 아니라 갈수록 피폐해 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되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없는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 있는 우리 농민과 농심을 먼저 달래야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칠레 FTA 비준 반대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안영근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근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입니다.

금번 FTA는 대한민국 최초의 FTA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본·싱가포르·아세안과의 FTA, 한·중·일 FTA 등 아태 지역의 경제 통합에 대비하면서 미주 유럽 등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FTA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 FTA 정책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접국가 간 혹은 대륙 간에 많은 FTA가 체결되었지만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FTA로서는 최초이기도 합니다. 금번 FTA를 통해서 한국과 칠레는 각각 장래 유망시장인 남미 시장과 역동적인 동북아 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칠레 FTA 비준을 통해서 우리의 무역자유화와 규제개혁 의지를 평가하고 있

습니다. 이번 FTA 비준 통과를 앞으로의 한일 FTA, 한국·싱가포르 FTA, 한국·아세안 FTA 등 후속 FTA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FTA는 이미 각국에서 통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정착되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184개의 FTA가 발효 중이며, 2005년까지 약 250개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70%나 되는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 무역의존도를 감안해 볼 때 지역주의 확산이라는 세계경제 통상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국들과의 FTA 체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칠레와의 FTA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칸쿤 WTO 각료회의 이후 주요 국가들이 다자간보다는 양자간 FTA를 중시하고 있으며,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FTA 추진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 홍콩·중국, 마카오·중국, 파나마·대만 FTA가 각각 발효됨으로써 중화권 4개국마저 FTA 미체결국 지위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WTO 회원국 중 FTA 미체결 국가는 몽골과 대한민국 단 두 나라뿐입니다.

우리 상대국인 칠레는 이미 지난 1월 22일 상원 본회의 통과를 마침으로써 FTA에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번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칠레와의 외교적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FTA 추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참여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계획에도 심대한 차질을 빚게 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칠레는 이미 3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동 협정들이 속속 발효됨에 따라 우리의 주력 수출품의 시장 상실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한·칠레 FTA를 반대하는 논리로 칠레가 세계 3대 농업 강국이니,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 중의 하나이니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칠레는 농산물 수출 세계 14위 국가이며 세계 농산물 수출의 0.6~0.7%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칠레의 포도 사과 배 등 과수농업은 전체 농산물 수출의 62%를 차지하는 등 경

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협상에서 쌀 사과 배는 예외 품목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마련을 통해 7년간 1조 2000억 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농업, 농촌지역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119조 투융자 계획을 수립,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칠레와 FTA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과실류 단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칠레와의 FTA가 조기에 비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실익도 중요하지만 국가경제를 고려하여 비준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농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도시근로자, 청년실업자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FTA뿐만 아니라 DDA 쌀 재협상 등 농업의 대외적 여건은 계속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러한 개방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장기적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칠레와의 FTA를 막는다고 해서 개방의 물결을 외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를 우리 농업의 체질 강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더 이상 국익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FTA 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秋美愛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秋美愛 議員 새천년민주당 秋美愛 의원입니다.

우선 이와 같이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겠습니다.

한·칠레 FTA는 먼저 기명투표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들이 마치 농촌 출신 의원들만 한·칠레 FTA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한·칠레 FTA를 반대하면 국익을 외면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한계의 돌파구는 결국 생기 있는 농업과 농촌에서 그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농촌 보존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 농업의 장래와 농민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또한 국가의 정책 기조를 판가름하는 성장의 한계를, 그 돌파구를 또 도시와 함께 농촌에서 찾자는 그런 것을 이해하신다면 이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 역사와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과정상의 문제점과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98년 11월 5일 국무총리 주재하의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농업 부문을 포함한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농림부는 이미 같은 해 6월 18일 칠레가 지역적으로 열대 아열대 온대에 걸친 광범위한 과채류 및 축산 분야의 농산물 수출 대국으로서 국내 시설재배 과채류와 경합이 심해서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중한 검토를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는 이를 묵살한 바 있습니다.

즉 농림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상대국 칠레의 농업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조사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연히 칠레가 남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의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고 그다지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계절적으로도 경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농림부가 크게 우려하여 위 대외경제조정위원회의 FTA 추진 결정 이후에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에 의하면 농림부가 우려한 대로 외교통상교섭본부의 판단이 실제 상황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외교통상부는 한번 내린 결정을 다시 재고하기는 커녕 관료주의의 책임회피적 관성대로 밀어붙이기와 한견주의에 집착하여 오늘

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당장 체결되지 않으면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추락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칠레는 세계적 농업 강국인데 칠레 같은 농업 강대국일 때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외교적 상식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자국의 체면이나 신뢰도 저하를 이유로 자국의 농업시장을 그저 내주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선진 농업 강국 아니라 선진 공업 강국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농업 부문에 한해서는 개방에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TO/DDA 농업 분야 협상도 타결이 쉽게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멕시코와 체결한 FTA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합되는 40%나 되는 농산품목을 WTO/DDA 농업 협상 이후에 재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을 상기해 주십시오.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이웃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와는 달리 매우 신중합니다. 일본은 농산물 비수출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아예 농산물 관세 양허 부분을 제외하거나 또는 DDA 협상 이후로 연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칠레로서는 우리나라와의 FTA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의 신뢰상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칠레도 98년 뉴질랜드와의 FTA를 자국 축산 농민의 반발로 파기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지난 97년 칠레·파나마와의 FTA도 중단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칠레 FTA로 농산물 시장을 내주면 WTO/DDA 농업 분야 협상에서도 유리한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발표한 4대 농업특별법이 정부의 주장대로 FTA 체결을 담보할 만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약 90조 원을 농업에 투자했지만 이 정도의 투자는 이미 피폐해진 농업을 되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119조 원을 향후 10년간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잘해야 우리 농업을 겨우 걸음마 단계로 일으킬 수 있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EU나 미국 등 선진 각국은 지난 수십 년간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해 온 나라임에도 지금 자국 농업만큼은 시장논리의 압력에서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재정정책의 확대, 다양한 직불제 등 소득 보전정책을 취하고, 국제적으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론이나 비교역적 관심사항 이론 등을 내세워서 시장개방의 직격탄을 되도록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정부는 지금 걸음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농업을 개방하여 농업 경쟁력이 막강한 거인과 맞서 싸우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몇 대 더 팔자는 계산으로 농업을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농촌을 포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농인구의 도시 유입, 도시 실직자의 증가, 빈곤계층 양산,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촌 공간의 황폐화는 환경보전의 국제적 추세와도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선진 여러 나라 가운데 자국의 농업을 포기하고 단순히 비교우위 논리로 시장에 그대로 방치하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과수농가 대책을 보면,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꼼꼼히 살펴보니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 과수농은 포기하라,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선언한 내용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과수농가의 포기를 재촉하는 것이 이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구체적 내용은 없이 그저 ‘폐원 지원을 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감추고서 마치 FTA를 반대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것인 양 몰아붙이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레 FTA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과채류 소비가 늘어나므로 과수농업은 농업 분야 중에서 시

장 전망이 가장 밝은,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 분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수농을 먼저 칠레 시장에 개방한다는 것은 국내 과수농가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 과수농가를 죽이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칠레 FTA에서 사과 배 감귤 등을 제외시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 복숭아 키위 오렌지 자몽 레몬 등 수입과일이 늘어날수록 사과와 배는 물론 우리 과실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저장가공기술의 발달로 값싼 열대과일이 연중 수입·유통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내 과일은 사과 배 감귤 등은 물론 다른 과일도 설 땅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포도 키위 복숭아 등은 농사 포기를 유도하고 폐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 대책의 전부입니다. 사과 배 감귤 등 간접 피해 품목은 WTO/DDA 협상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묘목 지원 등이나 해 주는 대책이 전부인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사과 배 감귤 등의 경우 간접 피해 품목이라고 해서 포도 복숭아 키위 농가처럼 소득 보전이나 폐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과수농이 잘못 알고 지금 당장 FTA가 체결되면 큰 보상을 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FTA가 아니라 WTO/DDA 협상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묘목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정부 방침을 보면, 마치 망해 가고 있는 과수농가에게 묘목을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망해 가는 과수농가에게 망해 가는 것을 돕겠다라는 것일 뿐이지 폐원 지원이나 묘목 지원이 결코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정부의 이번 지원대책은 한·칠레 FTA의 주피해자인 포도 복숭아 키위 농가에만 지원을 집중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과수농에 대해서는 WTO 협상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방이 되어야 지원하겠다는 사후대책, 사후약방문만 있을 뿐인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그만두고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하고자 합니다.

칠레와의 FTA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고해 줄 것을 바랍니다.

외교당국의 무지와 한견주의를 반성하고 2005년 1월 협상시한이 임박한 WTO/DDA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준을 연기하시거나 재협상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유시민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시민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와 비준동의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만든 것을 쓰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과 배 포도에서 핸드폰 자동차 신발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 기업과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것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대체 무엇으로 우리의 물건을 사 주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의원들도 우리 농촌이 살아야 한다는 것, 농민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분은 계시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한·칠레 FTA로 인해서 분명히 얻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 보면 얻는 사람이 얻는 것의 총량이 잃는 사람이 잃는 것의 총량을 초과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얻는 자의 얻는 것, 잃는 자의 잃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취하며, 전체적으로 국가가 이익을 얻는 가운데에서 손실을 감수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보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 이 국제화·개방화·세계화의 시대에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손으로 생산한 것만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寬用 의장, 趙富英 부의장과 사회교대)

아시다시피 칠레는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곡물 분야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축산물도 칠레의 경우에는 국제경쟁력이 그리 높

지 않습니다. 또 일부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뿐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칠레의 과수산업은 존경하는 秋美愛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주로 과수 분야에서 우리 농민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칠레산 포도의 경쟁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을 경우 FTA를 맞이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무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첫해에는 약 104억 원, 10년 후에는 1039억 원, 향후 10년간 총 누적 피해 규모가 약 5860억 원 정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렇게 예견되는 우리 농가의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지금까지 수립해 왔고 또 수립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정부는 향후 10년간 발생할 누적 피해액 약 5860억 원에 대비해서 향후 7년간 FTA기금 8000억 원과 지방비 2000억 원 등 1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FTA이행특별법을 제출하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농림해양수산위는 법안을 수정해서 FTA 지원기금 규모를 1조 20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고, 또 지금 세우고 있는 지원대책은 과원의 규모 확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수입 증가로 국내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경영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까지 함께 실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정부는 향후 예견되는 DDA협상 등 불가피한 개방 추세에 대비해서 지난해 1월 11일 119조 원의 중장기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또 향후 10년간 우리 농업의 청사진이 될 세부적인 농촌종합대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119조 원의 투융자 계획은 과거 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투자되었던 62조 원의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정도면 농촌과 농업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이 중에 2008년까

지 지원할 51조 원은 이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농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또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투입되는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또 용자가 농가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점을 감안해서 과거보다는 용자비율을 줄여서 전체의 25%가 용자이고 나머지 75%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정부만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도 지난 시기 많은 노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작년 말 우리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FTA기금을 1000억에서 160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또 부채대책에 3441억 원을 증액해서 농림 부문 예산만 이렇게 해서 5701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액분 8000억 원의 70%를 넘는 금액으로 SOC 등 다른 여러 분야의 예산이 절실한 사업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정부와 국회가 농림 부문의 예산을 집중 증액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칠레 FTA에 대비한 농어촌대책에 함께 힘을 모아서 세우는 데 합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정부는 농어촌 부채대책을 위해서 3441억 원을 증액해서 농가부채 부담을 경감시켰는데 상호금융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를 6.5%에서 3%로 인하했고, 또 신규정책자금의 금리는 4%에서 3%로 인하하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978억 원 늘려서 농민들이 담보없이도 대출을 좀더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채대책이 시행될 경우에 지원 대상 농가는 정책자금 이자 인하 38만 원, 상호금융대체자금 이자 인하로 50만 원, 농업경영개선자금 이자 인하로 약 141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1월 8일 한·칠레 FTA 비준이 무산된 이후에 국회는 정부와 협조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FTA 기금 출연금을 16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FTA기금 1조 2000억 원을 조기 조성할 수 있도록 했고, 상호금융대체자금의 금리인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대출금의 10%를 먼저 상환하도록 한 조건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대책이 다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한·칠레 FTA 비준안과 연계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FTA 이행특별법, 쌀의 질 향상과 관련된 법률들의 처리가 지연되면 이와 관련한 농림 부문 예산 5539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농가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만약 법안 통과를 계속 늦출 경우 피해는 점점 늘어나게 되어서 자체 예비비로 편성해 둔 5539억 원의 예산이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집행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초 농업과 농촌에 지원하고자 했던 예산이 대부분 사장되는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촌과 농업에 애정이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농가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채무부담을 줄여 주고 장기간에 걸쳐 약속한 각종 지원대책을 하루속히 시행하여 개방에 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국민들도 농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경제 문제와 농업·농촌 문제를 조화롭게 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秋美愛 의원님께서 칠레도 뉴질랜드와의 FTA를 폐지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따라 배울 만한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많이 안 계십니다마는, 민주당 동료 의원들께 호소합니다. 한·칠레 FTA는 아시는 것처럼 金大中 전 대통령께서 1998년 11월 APEC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뒤에 무려 여섯 차례의 협상을 거쳐서 2003년 2월 15일 퇴임 직전 지난 정부가 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칠레 FTA를 추진하던 당시 민주당은 집권당이었습니다. 과거 집권당이던 시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이 한·칠레 FTA 비준안이 오늘이 자리에서 그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당 동료 의원들의 손에 의해서 부결되는 사태가 생긴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한 사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책임성 있게……

(「좀 진지하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들으세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자유무역론이라는 것은 원래 보수의 가치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합리적인 보수정당을 표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합리적 보수정당은 언제나 시장원리를 우선적으로 신봉하는 정당입니다. 지금 개별적 이해관계 때문에 당연 합리적 보수정당의 경제이론적 기초가 되어야 할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시다면 이것은 정당의 정체성을 흐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개방의 대세를 이미 거스를 수 없고 문을 닫는다고 해서 우리의 농업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한·칠레 FTA 비준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趙富英 다음은 李仁基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仁基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칠곡 출신 한나라당 李仁基 의원입니다.

제 손에는 지금 삼성애니콜 휴대폰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수출을 통해서 오늘날 이 정도의 국가의 부를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애니콜이 미국 시장에서 노키아 다음으로 시장점유율 2위이고, 특히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삼성애니콜의 선호도가 1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만 달러 시대를 넘어서서 2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힘을 모아서 더 많은 수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역사 시간을 통해 보면서 나라의 지도자가 판단을 그르쳐서 향후 우리 조선 이후에 한국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해서 불리한 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함께 FTA를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칠레와 FTA를 체결하는 그 자체를 반대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칠레라는 나라를 선택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지금 이 시간까지 농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시골 농촌을 다니다가 오늘 이 본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외관상 보기에는 우리 농촌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마는, 생산은 조금 어떨지 몰라도 역시 유통과 가공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칠레 FTA 체결을 반대하는가를 준비된 원고에 의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 현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400만 농민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날로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 그리고 거센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하여 나날이 힘겨운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아시아 전역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 및 광우병 과동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닭고기 오리고기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축산농가들은 물론 관련 업계까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UR협상 이후 농가소득은 제자리 수준인데 반해 가구당 농가부채는 94년 788만 원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1989만 원으로 10년 사이에 250%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30, 40대 청장년층 농업경영인의 평균 부채는 4700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화훼·축산 농가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빚더미에 시름하고 있으며 갚을 길도 사실상 막막한 실정입니다.

농가소득의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는 점점 벌어져 2002년에는 도시가구에 비해서 7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농촌의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94년 25.2%에서 38.2%로 증가하여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농가 가구당 평균 경작면적은 1.38ha로 여전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한·칠레 FTA까지 체결하여 400만 농민들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라고 봅니다. 한·칠레 FTA는 칠레라는 나라를 선택한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칠레를 FTA 첫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한 데는 우리나라와는 농산물의 생산·출하 시기가 다르고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칠레는 다국적 기업의 거대한 자본으로 무장하여 총 수출액의 30% 이상을 농산물이 차지하는 세계적인 농업 강국입니다.

특히 과수농업에서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나라로 농장 면적이 500ha 이상인 대규모 경영체가 전체 과수농장 면적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칠레의 농장 대부분은 미국 자본에 의해서 경영이 되고 포장·저장 및 운송 등의 기술력이 뛰어나서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된 채 대량으로 수입되어 유통이 가능할 정도로 세계 최대의 과실 수출국입니다. 우리의 농민이 칠레의 농민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농민이 선진국의 거대한 자본과 경쟁을 하게 되는 양상입니다. 칠레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수입되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직접 피해만도 2조 1000억이 예상됩니다. 국내 과실농가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연쇄적으로 전체 농가가 무너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리고 칠레는 큰 매력이 없는 교역 상대국입니다. 칠레는 한국에 비해 인구는 32%에 불과하고 1인당 GDP는 56%, 전체 산업 중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4.5%밖에 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비해 상품 구매 능력이 18%에 불과하여 공산품 시장으로서 큰 매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더욱이 작년 한 해는 대칠레 무역적자 규모가 5억 불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칠레와의 FTA가 발효되면 무역적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며, 이는 국가경제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또한 칠레는 2009년이면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서 무관세가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칠레는 2001년부터 모든 품목에 대해 8%의 단일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1%씩 인하하고 있어서 2009년에는 자동적으로 무관세 국가가 됩니다.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인 실익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칠레는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 협상 대상국으로서 좋은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칠레 FTA의 체결은 앞으로 있을 WTO/DDA 농업협상에서 불리한 여건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거의 예외가 없는 관세철폐협상을 한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58개 품목을 예외로 인

정했으며, 일본과 EU는 칠레와의 협상에서 대다수의 농산물을 예외품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상이 체결되면 농산물관세 완전철폐의 선례를 남겨 앞으로 있을 일본 중국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상에서 상대국의 요구를 막아 내기가 어렵게 되며, 향후 WTO/DDA 농업협상에서도 불리한 여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개도국의 지위 유지,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최소화 등을 관철시키려는 협상목표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산업의,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없습니다. 칠레도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상에서 칠레 자국의 낙농업 보호를 위해서 중도에 협상을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농업구조를 가진 일본 역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상에서마져 농업 부분을 예외로 했으며, 태국과도 농업 부분을 제외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역시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상에서 농산물 예외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칠레 FTA가 농업과 농민에게는 피해를 끼치지만 공업과 도시민에게는 큰 혜택을 줄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비준동의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고자 하는 정부 측의 단편적인 논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한·칠레 FTA 비준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반발에 부닥치자 FTA이행특별법, 농가부채특별법, 삶의질향상법, 농특세법 등 이른바 4대 농민 지원 특별법 및 지난해 말 발표한 119조 투융자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묶어 국회비준의 지렛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농업의 10년 대계를 준비하고 대항하는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FTA 국회비준과 농산물시장 개방의 면죄부로 사용하려는 정부의 대응 자세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농업은 홍수 조절 그리고 대기 정화, 토지 유실 방지 등 산술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다원적 가치를 가진 국가의 기간산업입니다. 따라서 농업문제는 단순히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유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국제무역시장에서 FTA 체결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칠레와 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WTO/DDA 협상 이후로 미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趙富英** 다음은 임종석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성동구 출신 임종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와 비준동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8일 국회에 제출되어 7개월을 넘어서고 있는 한·칠레 FTA 비준안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대외의존도가 70%를 넘어서고 있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생각할 때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 통상정책 수단이며, 이미 전 세계적인 통상정책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칠레 간 FTA는 도하개발아젠다 등 다자간 협상을 위한 자유화와는 별도로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칠레를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오랜 준비와 협상을 통해 우리의 실정과 요구를 반영해서 자유화 방식으로 타결한 첫 번째 포괄적 양자통상협상의 결실입니다.

특히 한·칠레 FTA의 경우 수출시장 다변화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이자 한국의 FTA 시대를 개척해 가는 시발점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남미 지역에서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칠레가 중남미 주요 국가들과 경제보완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 103억 달러 중에서 대중남미 흑자가 51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한국 기업에 남미시장은 매력적입니다.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 수출은 약 5억 4000만 달러, 수입은 2억 2000만 달러가 늘어서 3억 2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보면 약 0.5% 정도의 성장률 증가를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세계 각국이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을 차별대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교역을 증대시키기 위해 FTA 체결은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세계 각국이 FTA 체결을 통해 지역경제협력

을 늘리고 비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는 등 장벽을 높이 쌓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계 경제의 여건을 생각할 때 세계 무역 대국 중에서 유일하게 단 1건의 FTA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입고 있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칠레 시장에서 국산 자동차 점유율은 지난해 2위에서 4위로 떨어진 반면에 칠레와 FTA를 체결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시장점유율이 4위와 5위에서 각각 2위와 3위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판매도 20% 이상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에서도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건설프로젝트 입찰자격을 아예 FTA 체결국 32개국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연간 3억 5000만 불 규모의 시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84개가 발효 중인 FTA는 2005년 말이면 3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블록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전 세계 교역량의 절반 이상이 FTA 회원국 간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규모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우리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145개국 중에서 몽골과 함께 단 둘뿐인 FTA 미체결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칠레 FTA 체결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의 대외 이미지와 국가 신인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자 피할 수 없는 통상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첫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통상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는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과의 FTA도 그 추진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칠레와 서명한 FTA조차 국내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나라가 일본 등 파급효과가 훨씬 큰 국가와의 FTA를 제대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확대를 위한 안정적 수출 및 투자거점을 확보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의 여건을 개선하며, 선진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한 첨단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FTA는 미

룰 수 없는 경제적 선택입니다.

더구나 비준안 및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04년 농업과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로 편성된 5539억 원의 예산 집행은 대단히 큰 곤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부채대책 미집행으로 지원 대상 농가의 이자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금리인하도 곤란해질 것이며, 2004년 FTA지원기금 1600억 원의 집행 불가로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한·칠레 FTA는 오랫동안 논란과 대책이 반복되어 온 묵은 과제입니다. 농촌을 지역구로 두신 의원님들의 절박한 처지와 고충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만 따진다면 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칠레와의 FTA를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개방의 물결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정부는 선대책 후비준이라는 원칙하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왔으며, FTA 체결에 따른 피해 우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FTA기금 출연금을 이미 확정된 1600억 원보다 증액된 5000억 원으로 늘리고, FTA기금 1조 2000억 원을 조기에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0년간 농업을 위한 전체 국고지원의 규모는, 119조에 달하는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포함하여, 180조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입장과 농업의 어려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할 시점입니다.

만일 농가피해에 대한 우려만을 논하며 FTA 체결을 무작정 미루다가 산업구조의 개편은 늦어지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도태될 운명에 처할 수도 있음을 우리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칠레는 지난 1월 22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한·칠레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한국의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국가로서 한국의 생존을 보장하는 길을 대한민국 국회가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趙富英 다음은 張誠源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誠源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새천년민주당 소속 전북 김제 출신 張誠源 의원입니다.

한국과 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나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과 정부 측에서 공산품 수출을 늘려야 할 한국의 처지에서 더 이상 비준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무역 자유화를 통한 무역 규모 확대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한·칠레의 무역구조를 분석해 보면 잘못된 것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FTA는 왜 체결하는 것입니까?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폐지해서 무역을 자유롭게 하여 수출입 물량을 늘려서 국익을 증진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은 칠레와의 무역에 있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000년에 3억 800만 달러, 2001년에 1억 2300만 달러, 2002년에 2억 8100만 달러, 작년에는 11월 말 현재까지 4억 89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이 해가 갈수록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칠레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불리하고 칠레에게 유리한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칠레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의 적자를 감수하자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칠레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자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왜 한·칠레 FTA를 강행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농민들도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국익이 없는, 왜 우리 농민에게 희생이 강요되는 칠레와의 협정을 서두르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농민의 희생 위에서 추진하는 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칠레 FTA를 체결하면 한국 공산품의 칠레에 대한 수출에 유리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자동차, 휴대전화, 석유화학 제품 등 대칠레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율은 6%에 불과합니다. 물론 6%도 폐지해서 무관세가 되면 그만큼 유리해지겠지만, 업계에서는 이 정도의 관세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FTA가 체결되지 않아서 한국 자동차의 칠레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자동차는 왜 같은 관세를 지불하고 여전히 최고의 시장점유율 30.8%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칠레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FTA 체결 때문이 아니라 거리가 바로 인근 국가이기 때문에 수송비가 적게 들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만 비교해도 거리가 더 가까운 아르헨티나의 시장점유율이 최근에 브라질을 앞질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의 관세율은 수입 1순위인 동피 등 비철금속 제품의 관세율이 8%, 2순위인 철강 등 금속광물이 1~2%, 3순위인 종이 제품이 5~8%, 4순위인 원목 등 임산물이 2%입니다. 칠레가 이들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관세장벽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다만 칠레가 한국시장에 많이 내다 팔려고 애 쓰고 있는 신선포도의 관세율은 45.5%로 높습니다. 신선포도의 이 높은 관세율을 무관세로 하자는 것이 바로 한·칠레 FTA 체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사실 관심 밖입니다.

칠레산 포도의 수출 가능 가격은 현행 관세 45.5%를 적용하는 경우에 1kg당 3060원 정도입니다. 무관세로 하는 경우에는 2180원선이 됩니다. 이 가격은 우리 국산 노지포도의 출하기인 7월에서부터 10월까지의 출하기 평균가격 1356원과 비교하면 800원가량 비싸서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지포도가 나오기 전인 3월에서부터 6월까지의 국산 시설포도 평균가격은 4380원 정도이고, 칠레산 포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관세 45.5%를 적용한 3060원입니다. 그래서 현행 관세를 적용한다 해도 칠레산이 1300여 원 싼 것입니다. 칠레산의 가격 경쟁력이 월등 높은 것입니다. 칠레는 우리 노지포도가 출하되지 않는 시설포도가 나올 때 포도를 수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를 체결해서 한·칠레 양국 상호간에 관세율을 굳이 하향 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국 무역량은, 칠레의 포도 수출량은 대체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정부가 한·칠레 FTA를 밀어붙이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한·칠레 FTA 체결에 얽매이지 말고 한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을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칠레를 첫 FTA 체결 대상국으로 선정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된 선정입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국가 중에서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몽골 뿐이라면서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잘못을, 정부가 잘못 선택한 것을 FTA 체결 반대 측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한·칠레 FTA가 체결될 경우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0.005%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연간 7억 100만 달러, 약 7300억 원 정도의 후생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미한 정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왜 정부가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하면서 FTA 체결을 강행하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부디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趙富英** 다음은 송광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천·단양 출신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신 존경하는 안영근 의원, 유시민 의원, 임종석 의원, 세 분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신 의원님들께서 논리적이고 구절 구절 우리 농민을 대표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 2회에 걸쳐서 표결 처리하지 못한 이후에 과연 우리 농림부장관께서는 농민들과 몇 번의 대화를 가졌느냐,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농민대표들을 만나서 우리 농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2년 전에 우리가 중국의 마늘을 수입을 해야지만 휴대폰을 팔아먹을 수 있다고 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우리 휴대폰을 수출하기 위

해서 마늘농가에게 지원해 준다고 한 금액의 약속이 있습니다.

부총리, 얼마나 지원해 주었는지 아세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농림부장관은 우리 농촌·농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반대하는 근본 원인이 뭘지 아십니까? 문제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을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기왕에 지원해 주는 것 좀더 지원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우리 농촌의 부채가 약 37조 원이 되는데 부채경감법에 의해서 된 것이 17조 원, 나머지 상호금융 20조 원이 있는데 거기에 정책자금을 갚기 위해서 상호금융에서 대출해서 갚은 돈, 순수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상호금융에서 받은 돈, 이것이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이자를 같이 3%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봤자 정확하게 따지면 10조도 안 됩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지금 들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농촌 지원하는 4대 법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상세히 들여다보면 농민들이 속고 또 속고 또 속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 이상이 지나갔는데 우리 농림부장관은 농민들과 대화도 안 하고 그네들에게 어떤 신뢰성도 안 보여 주고 하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몽골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운영의 틀 자체를 모르는 꼭 왜국 국회의원인 것처럼, 왜국 정치인인 것처럼 매도해 가더라 하는 얘기도요.

우리 농촌 출신 국회의원이 아무리 몰라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경제를 운영하는 데 70% 이상이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 존경하는 유시민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 남은 돈을 피해를 보는 어느 한쪽에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전례가 있고,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책을 농민들은 신뢰 못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정부 간에 조인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급하게 국회의 비준을 받은 나라가 있습니까, 농림부장관? 없지요? 보통 2년, 3년 걸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한 사안을 왜 그렇게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보다 더 신중히 생각하고 연구해서 DDA 협상 이후에 이것을 해도 늦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총리님께서 나오셨는데, 존경하는 총리님, 부총리님,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 농림부장관,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왜 자꾸 무리하게 밀어붙입니까?

농촌 출신이 아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법은 통과돼야 됩니다. 그러나 시기가 문제이고 정부가 농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 이후에 이 법이 통과돼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법을 통과하는 것은 유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趙富英 다음은 裴奇雲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裴奇雲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전남 나주 출신 裴奇雲 의원입니다.

제16대 국회 개원 이래 오늘처럼 암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칠레 FTA 국회비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단식농성에 들어가서 오늘로써 3 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기까지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고 깊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350만 우리 농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한 우리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전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을 차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저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먼저 오늘 처리 예정인 한·칠레 FTA 국회비

준안은 절대로 졸속으로 강행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협정체결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우리 국회에서 두 차례 연기되었다는 사실이 국회의장님 말씀대로 오늘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강행 처리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국이 잘못 선정된 농업강국 칠레와의 FTA는 다른 선진국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정 내용대로라면 10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예컨대 5~10년 동안 관세 철폐를 한다면 매년 10~20%의 관세감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이 3~5%의 저율관세 감축을 위한 WTO/DDA 협상이 금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세계 각국 정부가 자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더 나아가 각국 간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과 칠레도 자유무역협정을 파기까지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농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요구합니다.

설령 표결 처리를 하더라도 무기명 비밀투표는 절대 반대합니다. 인사문제도 아닌 중요한 국가정책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비밀투표로 처리하는 것은 관례에도 없고 사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중 142명의 국회의원이 이미 비준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는 것은 다수 국회의원을 비겁자로 기록되게 하고 우리 스스로 국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반의회적 작태입니다.

의장께서는 작년 12월 30일 비밀투표를 요구한 56명의 의원들이 누구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농촌 출신 의원들만 한·칠레 FTA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일부 언론이 '쇄국'이라는 표현까지 단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한·칠레 FTA는 오천년 넘게 이어온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위기로 몰아낼 것이고, 가뜰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과 농민의 숨통을 옥죄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의 찬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는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한 국가 정책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기명투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국민들은 우리를 당당한 16대 국회의원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부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역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趙富英 다음은 이규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택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여주 출신 이규택 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은 계속된 실정으로 파탄지경에 처해 있으며, 농민들은 하루하루 FTA와 DDA를 목전에 두고 실의와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농업이 FTA 비준동의안이라는 사형선고를 받고 우리 농업과 농촌이 죽어 가느냐, 아니면 다시 희망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러시아 출신 미국의 경제학자 쿠즈네츠는 말하기를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갈파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프랑스 등 선진국을 보십시오. 다 농업이 발전된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촌 현실은 어떻습니까?

1994년 UR 수입개방 이후 농민 수가 520만 명에서 350만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농가소득이 1994년에는 도시가구 소득과 비슷했습니다만, 지금은 도시가구의 70%도 안 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농가의 부채도 늘어나 1994년도에는 가구당 900만 원 하던 농가부채가 지금은 3000만 원이 넘는다는 엄청난 비통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농촌 현실은 안중에도 없이 현 정부는 한·칠레 FTA를 강행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업문제는 경제논리로 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칠레 FTA를 함으로써 몇억 달러 더 수출한다고 해서 당장 몇 년 사이에 경제적인 이익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20년, 30년 이후에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우리 눈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우리에게 잉여농산물인 밀가루를 주고 우리에게 섬유를 주는 바람에 우리 어렸을 때, 1930~1940년대에 있었던 밀밭이 없어지고 목화밭이 없어졌습니다.

만일에 한·칠레 FTA가 통과되고 미국과의 FTA가 통과되고 중국과의 FTA가 통과되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전답이 없어지고 쌀농사가 없어진다는 게 명약관화한 것인데 현 정부에서는 당장 수억 달러, 돈 몇천억 때문에 여기에 매달려서 농촌을 죽이고 농업을 죽이는 살농정책을 펼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한국·칠레와의 FTA는 잘못됐고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생략합니다.

칠레는 인구가 우리의 32%, GDP가 우리의 56%로 공산품을 수출하기에는 시장이 작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2002년에 3억 불의 무역적자를 본 칠레시장을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시장으로 판단한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요 착오입니다.

칠레는 2010년까지 전면 개방할 계획이어서 우리가 더 이상 시장을 차지할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일본이 그 이익을 가져갈 것입니다.

또한 칠레는 우리와 농업 부문에 있어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라 경쟁관계입니다. 우리의 첫단추가 농업 대수출 국가인 칠레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라든지 일본 등과 먼저 추진했어야 됩니다.

칠레가 과수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앞서 주장하셨습니다. 칠레의 신선과일 수출현황을 보면 포도가 세계 1위이고 자두가 세계 2위이고 키위가 세계 3위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한·칠레 FTA가 체결되지 않아 대외신인도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통일외교통상부장관!

미국이 국가 간 맺은 투자협정을 길게는 10년 이상 넘어서야 통과시키고 지금도 5년이 넘는 8

개 협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협정한 지 1년도 안 돼서 부랴부랴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은 농산물 비수출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아예 농산물 관세 양허 부분을 제외하거나 또는 DDA 협상 이후로 연기하는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칠레도 1998년도에 뉴질랜드와 FTA를 협상했습니다마는, 국내 축산농가의 반발로 인해 파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신인도 때문입니까? 자신들도 파기한 그런 국가하고 우리가 왜 FTA를 해야 됩니까?

세 번째, 한·칠레 FTA가 통과되면 이후 DDA 협상, 쌀 재협상에서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요는 뭐가 문제냐? 한국과 칠레와의 협상에서 농산물 품목이 몇 개나 하면 1083개입니다. 앞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인도 등 농업 수출 국가에서 우리도 1100개의 농산물 개방해 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가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칠레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만일 미국이나 중국과 할 때 우리가 그걸 피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과 칠레와의 FTA 비준동의안이 되면 우리 농업이 망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붓물이 터져서 아마 내년쯤 미국이 하자고 할 테고, 또 내년쯤에 중국이 하자고 그러고, 또 인도네시아가 하자고 하고 태국이 하자고 그럴 것입니다. 수천 개의 농산물이 붓물처럼 들어올 때 농업이 망하는 것 정부가 뻔히 알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비전이나 어떤 전략을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책을 세워 달라 이거예요.

쌀농사가 밀밭처럼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 놔라 이거예요. 다 포기하고 떠나면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또 앞으로 식량안보나 식량전쟁을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당장 코앞에 있는 3억 불, 2억 불에 눈이 어두워서 20년, 30년 후에 우리 농업이 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포기할 것입니까?

또 농업예산 119조, 이것 사탕발림이에요. 속임수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119조 원 투융자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기존 농림부 소관 사업예산에 현행 운영하고 있는 농림부 소관 기금을 포함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불과 몇조입니다, 몇조!

盧武鉉 대통령은 국가 전체 예산의 10%를 농림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자신의 공약도 못 지키면서 앞으로 10년간 119조를 투융자하겠다는? 누가 믿겠어요? 앞으로 盧武鉉 대통령 임기 4년 동안에 100조를 한다면 우리가 믿겠지만 앞으로 10년, 자기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보장을 받습니까?

단지 농어업인의 부채경감대책으로 부채의 원금이 아닌 이자의 금리를 인하하고 농림어업인 복지증진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피해보상으로는 극히 미흡합니다.

결론적으로 DDA 협상 결과는 개방에 있어 국제적인 표준이 될 것입니다. DDA가 한 국가의 헌법이라면 각 국가 간의 FTA는 별률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헌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그 헌법에 따라서 법률이 제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WTO/DDA 농업협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그 헌법에 따라서 각 국가 간의 FTA를 체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순서이고, 순리입니다.

그런데 DDA 협상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민이나 우리는 한·칠레 비준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기하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20년, 30년 이후에, 통일을 대비한 이후에 우리 농민이 이렇게 살 수 있다, 우리 농업을 보장할 수 있다 하는 비전과 희망과 대책을 먼저 세워라 이거예요. 119조! 국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119조면 1조 부족한 120조예요. 농민들이 350만 명이니까 차라리 그 120조 원을 나누어 줘요. 300만 가구면 얼마예요? 연간 3억인가 돼요.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정부는, 농림부는 농업이 망하든 말든 손대지 마세요! 이런 극단적인 요구를 하는 농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119조요? 또 빔입니다. 우선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금 직불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직불제요? 농업예산이 우리 예산의 8.7%밖에 안 돼요.

EU가 얼마인지 압니까? 농림부장관 어디 가셨어요?

의장님, 장관님이 안 계시니까 뭘 질문할 데가 없네요.

EU가 70%입니다. 미국이 36%입니다.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지원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 모양 盧武鉉 대통령이 농업정책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FTA, DDA의 농업정책 추진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직접 챙기고 있어요. 우리도 대통령 산하에 있는 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을, 강력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盧武鉉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서 농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식량전쟁이 납니다. 작년에 중국이 흉년이 들어서 수출하던 그 막대한 옥수수 금년부터 수출 중단입니다. 이것이 식량안보이고 이것이 식량전쟁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10년 이내에 우리도 이런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이럴 때 우리 대책 있습니까?

(趙富英 부의장, 朴寬用 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세계 곡물시장은 5대 곡물메이저가 장악하고 있고 공급자 위주의 시장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카길 등 다국적기업들은 정보와 수송능력을 독점하면서 세계 식량가격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농업 생산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식량안보 내지 식량전쟁 시대가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안건은 일반 안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공개투표 즉 전자투표를 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에 비밀투표를 할 경우에는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黃昌柱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黃昌柱 議員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농사꾼 출신이고 지금도 농업을 하고 있는 새천년민주당 소속 黃昌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은 원론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반대토론에 나

서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번 추진하려는 FTA협정은 대상 국가를 잘못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필이면 칠레공화국이나 하는 데 대해 저는 의문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FTA는 무역흑자가 자신 있는 국가와 협정하고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1억 5000만의 멕시코는 옆 동네인 일본에 빼앗기고 인구 겨우 1500만에 불과한 칠레와의 FTA협정을 통해 무슨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지, 이에 대하여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칠레는 농업 경쟁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칠레와의 FTA가 체결될 경우 일차로 몇 개 품목의 과수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점차적으로 몇 년 안에 전 농산물과 수산물을 개방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밀듯이 밀려드는 외국 농산물로 인해 우리 농업은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파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몇 푼 안 되는 이익보다는 더 큰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게 될 사태는 불을 보듯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국가 간 무역협정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우리 정부가 그 무능력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큰 이익은 없으면서 농촌과 농업, 농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FTA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주요 논리는 FTA가 체결이 안 되어 공산품 수출, 특히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칠레와 FTA협정이 되지 않았어도 금액기준으로 1년 사이에 7%가 더 성장하여 지난해 31.8%의 아주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지난해 기아자동차의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시장점유율이 10.6% 증가하고 있는 기록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칠레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주요 남미 국가에서 모두 무역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FTA가 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들 국가의 환율이 200~300% 올랐기 때문에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칠레는 특히 지난 97년도보다 환율이 70%나 오른 준고정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칠레는 이번

FTA에서 모험이 따르고 손실이 예상되는 금융업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자신 없고 피해가 큰 농산물·축산물은 제외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국가 체면이 손상된다는 이유로 한·칠레 간의 FTA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강행 처리하려는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국익 손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과연 국익을 위한 결단인지 우리는 재고해 봐야 합니다.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 이후 장단기적으로 우리 한국 정부가, 한국 농업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 계산 방법은 우리 농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의견입니다. 10년 동안 5860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국내 과수농가에만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계산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업을 잘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과수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관이 있는 모든 농업에 엄청난 피해와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타 작물에도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모두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 현실에서 가격이 연쇄적으로 폭락해 우리 농촌에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은 러시아의 사례에서 보지 않아도 국가의 식량위기를 가져올 것은 모두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 농가를 위해 10년 동안 1조 2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왜 농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겠습니까? 정부의 기금이라는 것이 명목상 적시한 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증세 같지만 감기로 인한 합병증이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지 않고 감기약만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죽어 가는 가족을 병원에 데려가 보지도 못하고 치료도 해 보지 못하고 죽고 난 후에 장례비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진정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는 피해 농가의 지원대책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농사 포기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한 세계자유무역협정, 특히 한·칠레 FTA협정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농림어업인삶의 질향상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질향상특별법을 보십시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산은 없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부가 10년 동안 11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10년 동안 농림어업 예산 그대로 모아 봐도 100조 원이 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많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농민들이 지금도 밖에서 저렇게 죽기를 무릅쓰고 반대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과 그동안 정부가 농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가 부채를 한 예로 들겠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농민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가부채경감특별법을 2회에 걸쳐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농어민들이 ‘부채 해결이 되었다’ ‘부채경감특별법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몇 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애써서 만든 특별법이 정부에 가면 국회의 뜻이 왜곡되고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차 떼고 포 떼고 결국 농민들에게는 정부가 발표한 언론에서 보여 주는 대책과는 현실과 전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동안 농민들과 정부 사이에 큰 불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작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부채 대부분이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자금입니다. 이번에 부채대책 논의하시면서 이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이 약 20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라 하더라도 이 중에서 순수하게 농업예산으로, 농업자금으로 쓰인 자금을 철저히 선별하면 아마 대략 10조 원 내지 13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들 계십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주는 정도의 성의가 그리고 예산을 정부는 세워 놓고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농민들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

그동안 우리는, 우리 국민은 많이 헛갈리고 있습니다. 42조 원, 45조 원, 119조 원 투자하는데 뭘 저렇게 농민은 달라고 하고 매일 밑 빠진 독에 기름 붓기냐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실제 그렇게 투자됐으면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42조 원, 농촌에 학교 짓고 다리 놓고 병원 짓고 하천 관리하고 농업공직자 봉급 주고 빌려 주고 한 것 다 보태서 42조 원 아납니까? 이것을 가지고 온 국민들한테 마치 농촌에 그냥 준 것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농촌에만 42조 주고 그동안 도시에는 아무것도 안 했던 말입니까? 이 119조도 이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저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등 무역 선진국들은, 특히 미국도 그러합니다.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할 때는 그 분야에 직접 연관이 있는 농민대표들과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다 정해 놓고 이제 와서 농민들을 설득하고 협박합니다.

조금 전에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농가부채경감특별법, 삶의질향상법, 그리고 무슨 예산, 이것 FTA협상 비준 안 해 주면 못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장난치고 협박할 것입니까? 이것이 FTA 통과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진정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농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농민들이 옛날과 다릅니다.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많은 의원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한·칠레 간의 FTA 비준이 늦춰질 경우 외국과의 대외신인도를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 칠레와 같은 농업 강국과의 FTA를 체결할 때는 매우 그리고 참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나라인 칠레 역시도 지난 97년과 98년에 자국 축산 농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뉴질랜드, 파나마와의 협상에서 FTA를 파기한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선진국인 미국도 보십시오. 협정 체결일로부터 비준일까지 걸린 기간을 보면 평균 3년이 넘어 심지어 10년이 걸린 사안들도 있습니다. 현재도 미국 의회에서 8개 정도 법안은 비준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국가신인도, 체면 운운하면서 나라의 피해가 볼 보듯 뻔한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무위원님들!

이렇게 농민들을 볼모로, 예산을 볼모로 협박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민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 대해서 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정부의 말을, 정부의 대책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협정을 비준하시더라도 그 시기는 농가 피해를 정확하게 산출해 보시고 그 피해 대책으로서 농민들을 위한 예산 확보 방법을 좀더 명확하게, 두루뭉수리하게 기금 성격이 아닌,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민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채경감이 피부에 와 닿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신 후에 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농민을 위하는 모습을 의연하게 보여 주시면 농민도 정부를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오늘 강행 처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정부가 제출한 한·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비준안을 오늘 유보해 주십시오!

농민 출신 농사꾼, 농촌과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朴寬用 다음 김일운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만 요령껏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운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칠레 FTA 국회비준동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언론은 당장 비난할 것입니다. ‘농민의 표를 의식하여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농촌당 의원은 매국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반국가적 매국행위이고 무엇이 국가를 위하는 애국행위입니까? 국민을 대변하면 매국자이고 도시를 대변하면 애국자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망국적인 분열 여론을 조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들은, 그 중의 많은 농민들은 국회 앞에서 칼바람을 맞고 물대포를 맞으며 농업을 살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자라는 말입니까?

400만 농민과 농민단체 그리고 이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저지로 인해 수차례나 국회비준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표결이 무산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작 한 것은 여론몰이식 편 가르기뿐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민을 설득하고 취약한 농업구조를 지켜낼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대외적 신인도 하락이라는 위기감 조성뿐이었습니다.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를 비롯하여 여러 경제인 단체들은 이번에는 분명히 국회비준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을 통하여 나라 전체를 농촌당, 도시당으로 구분하여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의원들을 지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과 관련 단체들은 충분한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쳐 17대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극한 대립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정부의 무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작정 국회를 편 갈라서 몰아세우는 것은 정책 미비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정책 마련도 없이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 처리가 미루어지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진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칠레 FTA 비준이 궁극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은 농민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준비 과정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시간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의 대외신인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농업 기반 체를 담보로 성급하게 비준을 동의한다면 더 큰 국가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물론 1년의 과정 속에서 정부가 농업인의 요구를 수렴하여 수립한 대책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농민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을 믿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제 국가의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론 분열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더 이상 국론 분열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농업정책과 통상협상에서 반드시 농업계의 참여와 의견 수렴,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농민이 본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정부는 특별히, 특별히 그 대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러한 민감한 사안을 성급하게 처리하는 데만 주력하는 몇몇 의원들이 무기명투표 방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절대 안 될 말입니다. 떳떳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표결할 수 있도록 기명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무기명투표를 한다면 또다시 비겁하게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다는 비난을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李正一 의원 나오셔서…

○李正一 議員 새천년민주당 해남·진도군 출신 李正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단히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칠레 FTA는 국민적인 관심, 국가적인 큰 관심사입니다.

지금 여의도공원에서는 2만이 넘는 전국에서 올라온 농민대표들이 추위 속에서 우리들만을 쳐다보고 떨고 있습니다. 의석의 반도 차지 않는 이 자리에서 몇 분의 의원님들만 모시고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게 제 마음을 대단히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언론에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농촌 출신 의

원들을 보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왜곡된 주장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의원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책임 있는 공당의 정치지도자가 FTA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농민의 표만 의식하는 정치꾼으로 매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어민 인구는, 농어촌은 소수 집단입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농촌 출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이런 대변을, 권익을 지켜 주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최남단 땅끝마을 해남·진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농어촌 출신 의원으로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농촌 실정에 대해 몇 말씀 드리면서 한·칠레 FTA를 반대합니다.

이제 농촌은 더 이상 따뜻한 어머니 품이 아닙니다. 농어촌은 농어가 부채, 빚 때문에 야반도주하는 곳입니다. 장가를 못 가 농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곳입니다. 1년 동안 어린아이 출생신고가 단 한 건이 없는, 생명이 단절된 마을이 많은 곳입니다. 손자를 둔 60대 할아버지가 마을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곳이 바로 농촌 지역인 것입니다.

2002년 말 현재 농업 경영자 중에서 30세 미만의 청년층은 0.3%에 불과한 반면에 은퇴를 앞둔 60세 이상의 노령층은 56.7%에 달하고 있습니다.

누가 농촌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까? 누가 농촌에서 살려고 한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가 자식을 결혼시켜서 빚만 늘고 있는, 고생만 하는 농촌에 살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한·칠레 FTA 국회비준동의안은 굴레를 쓰고 있는 농민들 머리 위에 또다시 바윗돌을 올려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작년 말까지 한나라당에서는 崔秉烈 대표님을 비롯하여 86명의 의원님이, 새천년민주당에서는 韓和甲 전 대표님을 비롯한 30여 명의 의원님들이, 열린우리당에서는 존경하는 정동영 의장님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님이, 자민련에서는 이인제 의원님을 포함한 4명의 의원님이, 기타 유시민·김원웅·李漢東·오장섭·이우재 의원님 등 총 159명의 의원님들이 한·칠레 FTA 국회비준 반대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정수 절반이 넘는 의원님들이 한·칠레 FTA가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에 절대적으로 피해

를 입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반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WTO 무한 경쟁 체제하에서 우리의 농업, 우리의 농산물은 무엇 하나 국제경쟁력을 갖춘 게 없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하여 지난 92년부터 시작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은 농어가 부채만 늘려 놓고 말았습니다. 92년 호당 560만 원이던 농가 부채가 2002년에는 2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가 본연의 업무와 직무를 내던지고 한·칠레 FTA 국회비준 관철을 위해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한·칠레 FTA 국회비준동의안에 전력투구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칠레 FTA 국회비준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내일 당장 대한민국이 국제미아라도 되는 것입니까? 한·칠레 FTA 국회비준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내일 당장 무너져서 희생 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盧武鉉 대통령, 高建 국무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고, 동서로 나뉘어 있는 마당에 또다시 농촌과 도시가 나뉘고, 농민과 도시민이 나뉘는 분열과 파괴의 한·칠레 FTA 국회비준동의안을 왜 오늘, 지금 바로 통과시켜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는 정부입니까?

정부는 한·칠레 FTA가 통과되지 못하면 세계 속의 외톨이가 되고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조만간 우리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개월간 우리나라는 두 자릿수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은 무역사상 최대의 흑자폭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농민을 이처럼 기만하고 협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농민들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국회 앞에서 FTA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의견마저 수렴하지 못한 정부의 한·칠레 FTA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과연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그동안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농업정책 중 농어민으로부터 환영받은 정책이 있으면 하나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간 협정, 협약 등 경제협상 과정

에서 농업이 피해를 보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하나라도 제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농민이 이익을 본 정책, 협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칠레는 다 아시다시피 농업 선진국입니다. 칠레산 과일 가격은 한국의 4분의 1 내지는 20분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칠레의 농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메이저 다국적기업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 체결은 대한민국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니고 우리나라와 다국적기업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80여 개 칠레산 농축산물이 무관세로 수입되어 온다면 한국의 농업, 농촌, 농민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경제적 이득은 과대 포장되어 있습니다. 칠레는 이미 다국적기업의 무한경쟁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칠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대부분의 나라와 무관세특혜협정을 맺고 있으며, EU 미국 등과도 FTA를 이미 체결한 바 있습니다. 칠레는 중남미의 대표적 자유경쟁시장으로 경쟁이 극심한 시장입니다.

98년도 우리나라 전자제품을 비롯한 제조업이 급격한 수출 증대를 보이던 시절과는 판이하게 환경이 달라져 있습니다. 칠레와의 통상무역에서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무역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APEC 보고르선언에 따른 칠레의 이행계획서에 의하면, 칠레 정부는 APEC 회원국, WTO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점차적인 관세철폐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APEC 회원국에게는 2010년까지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한·칠레 FTA를 지금 당장 체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업이 바로서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국가도 없습니다. 식량을 지원받는 나라 중 단 한 국가도 선진국이 없습니다. 농업을 지키는 것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을 지키는 일이며, 일류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기본입니다.

농업은 살아야 합니다. 지난 90년과 91년, 농산물 수입자유화로 인한 바나나 대량 수입으로 절반에 이르는 과수농가가 일시에 폐농한 적이 있

습니다. 98년도 미국산 오렌지의 대량 수입으로 제주도 감귤농가들이 대부분 폐농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0년 중국과 마늘과동 시 대중국 휴대폰 수출을 위해 우리나라 마늘농가의 폐농과 농민의 눈물을 외면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한·칠레 FTA는 칠레에 자동차, 전자제품, 휴대폰을 팔아먹기 위해 힘없는 우리 농민들을 또다시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농민은 국민도 아닌 것입니다. 단지 농촌에 살고 농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400만 농·수·축·임산인과 오늘도 이 운동에 같이 동참하고 계신 전국의 농어민 대표들께 우리나라 농업이 이 지경까지 온 데 대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뜻을 같이해 주신 존경하는 159명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손에 우리 농민의 살 길과 우리의 식량주권이 달려 있습니다. 농민도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농촌이 힘겹고 어렵다는 것도 다 알면서 농민·농촌 보호에 이다지도 매정하단 말씀입니까?

한·칠레 FTA를 반대하는 촌부의 걱정을 소개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 어느 한 촌부의 가슴 맺힌 절규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바뀌면서 온갖 수혜를 다 베풀어 금방이라도 희망 가득한 농촌환경이 오는 듯 말잔치를 해 오더니 지금의 농업, 농민들은 안락사를 기다리는 시한부 생명처럼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우리 농민들은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새마을사업부터 시작해 소 키워 망하고, 나무 심어 망하고, 야채 심어 망하고, 규모를 늘려 망하고, 기계화 사업에 망했습니다. 망하고 망하면서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더미는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이젠 빚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는 것이 이 나라 농어민들의 소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 나라 위정자들은 모두 우리 농민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말을 믿고 숙명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빛이나 물려주지 않고, 생전에 빛

이나 갓 죽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런 절규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라건대 이제는 정치권도 행정부도 국민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議長 朴寬用 여러분들 그만 할까요?

(「그만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희규 의원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이희규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 출신 이희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되어야만 한다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주지하다시피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 체결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 동의 절차가 늦어진 이유는 이 협정을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먼저 마련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고작 지난해 11월 정부는 2004년부터 10년간 농업에 11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만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구체성이 없는 막연한 발표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기대보다는 심한 우려를 갖게 합니다.

정부는 농업 개방이 일기 시작한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난 10년간 농업 구조조정을 위해 62조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25조 원이라는 빚더미 위에서 시름하는 농촌, 파탄 난 농촌, 떠나가는 농촌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세부 계획 없이 단순히 얼마를 투입하겠다고만 말하는 것은 분노한 농심을 잠재우기 위한 무마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WTO가 허용하는 직간접적인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기간 및 예산이 포함된 항목별 총예산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련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하기 전에 한·칠레 협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농정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중장기적 전략을 우선 먼저 수립해야만 합니다.

물론 지난 2002년 2월에 대통령 산하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이 위원회는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실질적인 회의는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어느 한 가지 대책이나 합의점도 도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이 위원회의 실질적인 논의와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농민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담긴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또 한·칠레 협정 비준 지연으로 인한 손실보다도 훨씬 더 큰 국가적·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업의 문제는 경제 원론적 비교우위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업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농민의 눈물과 피멍 든 가슴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 식량 무기화 시대를 대비하여 장기적 국가 생존 차원에서 신중을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자리는 언제부터인가 내일을 잃어버린 우리 농민들에게 내일을 찾아줄 수 있는 희망의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도 열 사람의 한 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한 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동의안을 이처럼 졸속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대통령 산하 특

위에서 더 진지한 논의를 거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회 인준 과정에 앞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다”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토론을 종결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마는, 신청 들어오신 金容鈞 의원, 李方鎬 의원, 李龍三 의원 세 분의 토론을 듣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청이 들어온 것도 없고, 받지 않겠습니다.

金容鈞 의원 발언하십시오.

○金容鈞 議員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산청·합천 출신 金容鈞 의원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9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표결 중단 이유의 무엇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협정의 비준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FTA 그 자체의 결함과 또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없고, 이 협정에 대한 농민의 분노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FTA 협정의 체결은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의 붕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협정의 상대방으로 당초 농업국인 칠레를 선택한 것 자체가 크나큰 판단의 잘못이었습니다. 칠레는 농토는 크지만 인구는 불과 1500만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농산물이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반면 공산품에 대한 수요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품은 대개 인구의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업이 피해를 입게 되면 지금 현재는 식량난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향후 식량 자급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미국도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업이 국가에서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방이 강대국으로 에워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이 농업이 생명산업이요, 안보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극동지방에 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업 기반이 붕괴되고 농민과 농업의 경쟁력 상실이 초래되었을 때,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농민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활발한 연구와 논의를 진작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공산품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농업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협상을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농민 대표가 참석해야 되고, 또 이러한 협상을 시행하게 될 때 그 이전에 농민을 참여시켜서 후속대책을 같이 강구하는 성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논농업이 쇠퇴하게 될 때 우리 국토는 참으로 황량한 별판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봄이 되면 논을 갈아서 물을 담아 두기 때문에 농촌에 지하수가 흐른다고 합니다마는, 논농사를 중지하게 되면 2, 3년 안으로 농촌의 지하수가 완전히 고갈되어서 황폐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농토를 살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흔히 이 협정의 비준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 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협정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1월의 수출입 실적을 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190억 달러를 넘어서 최대의 증가율을 보였고, 무역수지 흑자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FTA 협정 비준이 수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맞는 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칠레 협정에서는 쌀 사과 배는 개방에서 제외되고, 포도는 계절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외의 과수농업에는 크나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후속대책은 FTA 피해에 대해서 7년간 1조 2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향후 10년간 119조를 농민과 농업에 투융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공적인 숫자만 있을 뿐 그 돈을 어떻게 모으며, 그 정책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서 농업과 농민을 일으켜 세울 것이냐 하는 청사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현실적으로 언론이나 기업 등의 여론에

떠밀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시급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으나, 모든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민과 농업 자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납득 가능한 선대책, 후 FTA협정 체결에 대한 비준이었습니다.

도시 출신 의원님들께서는 농촌의 비참한 실정을 잘 모릅니다. 도시 출신 의원들은 FTA 이후 대칠레 공산품 수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농촌 출신 의원들은 농산물 수입 이후 농민의 손실, 농업의 타격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획일적인 생각은 이 단계에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며, 농민의 고통과 분노를 지금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뿐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명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농촌에 새로운 행복과 번영의 기틀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들던 그 평화로운 목가와 피리소리가 다시 살아나고, 농민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농촌에서 평생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런던에 있는 하이드파크가 없었더라면 1000만이 넘는 런던시민 중에서 많은 정신병자와 범죄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일 도시만 있고 농촌이 피폐해서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는 고향도 없고, 여러분이 태어난 그 시골의 오막살이도 없고, 여러분이 어릴 때 뛰어놀던 그 논밭과 강둑이 전부 황폐해졌을 때 여러분의 정서는 얼마나 메말라질 것이며, 또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이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주말을 보내고, 또 노년을 보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농촌, 농촌을 살리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농촌의 행복과 번영을 이룩하는 방법은 이 FTA 비준안 통과에 앞서서 농민들이 이 협정으로 인해서 도산을 하거나, 농토를 버리거나, 농토를 황폐화시키거나, 농토를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협정의 비준에 대한 동의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의 명확한 역

사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준안에 대한 비밀투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결단을 책임 정치라는 그러한 원칙하에서 스스로 이름을 밝히고, 우리가 우리 농촌,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시점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지 명확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각 국회의원의 명확한 찬반 의사가 회의록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투표 방법이 채택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 두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 李方鎬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李方鎬 議員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남 사천 출신 李方鎬 의원입니다.

최근의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지 또 많은 논조들이 한·칠레 FTA를 반대를 하게 되면 국익을 무시하고, 국익을 모르고, 또 아주 보수적인, 또 쇠국적인 어떤 그러한 의원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 10대국에 들어가는 무역 대국으로서 FTA가 없는 것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부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FTA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FTA의 여러 가지 협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우리 국익을 충분하게 대변하지 못하면 그것은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농업과 농촌 문제를 단순히 농사짓는 농민의 문제로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 농업과 농촌 문제는 이것은 바로 우리 국토 보전이라든지, 또 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외적인 많은 문제 이런 것을 함께 고려한 측면의 농촌 문제를 접근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칠레 FTA 문제에서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이 농업 최강국인 칠레를 선택한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협

정 내용이 과연 우리 국익을 최대한으로 대변할, 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의 충실한 내용이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설사 이 FTA라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사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대책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대책을 세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저는 한·칠레 FTA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언론들이 반대하는 우리의 농촌 출신 의원들에 대해서 무슨 농민의 표를 의식해서……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칠레 FTA 문제는 과거 YS 정부 때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러 가지 상의한 끝에, 논의한 끝에 ‘이것은 실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폐기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DJ 정부 들어오고 나서 뭔가 자유무역 협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에서, 또 그리고 98년 11월에 APEC 정상회담에서,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그것이 논의되었다는, 의제로 삼았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농업 수출국입니다. 왜 하필 우리가 칠레를 상대로 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당시 농림부에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 주요 연구기관에서도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았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이것을 강행했던 것은 그 상대국을 정하는 데 대단히 문제였다 하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협정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과와 배를 예외 조항으로 두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절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 큰 피해가 없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10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거의 관세를 철폐하고 낮을 경우에 우리 농촌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우리 농촌

이 이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협정 내용입니다.

지금 특히 농업문제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마는, 금융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협상 과정에서 완전히 우리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칠레가 그 당시 EU와 협상할 때 금융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양보를 해서 충실한 내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당시에 거론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정부에서는 협정 체결 이후의 농업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피해농가에 대해서 7년 동안 8000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8000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4000억은 용자고, 4000억은 보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 농가한테 주는 내용은 불과 600억 정도 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원할 수 있는 농림부 예산을 그대로 끼워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년간에 119조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년간에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이런 모든 예산을 짜깁기 식으로 죽 맞춰 가지고 119조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지원해 준다고.

어떻게 보면 도시 출신 의원들, 도시 빈민들, 또 도시 근로자들은 이게 완전히 무슨 농촌에 돈벼락이 쏟아진 양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두 번 속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1년도에 마늘 파동이 났을 때 정부에서 3년 동안에 1조 8000억을 지원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지어 도로 내는 것까지, 사소한 농촌의 투자까지 모두 보태 가지고 마늘농가에 지원할 양으로 호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부 다 부도를 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119조 8000억을 어느 농민이 믿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가 농민을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WTO 협정이 되고 나서 WTO 이행법을 만들겠다고 정부가 농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원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협정 끝나고 나서 WTO 이행법 만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공약(空約)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농민을 속이니까 농민이 믿겠습니까?

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충실한 내용, 좀더 충실한 약속, 이것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DDA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쌀 재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이 쌀 재협상과 DDA 협상에는 관세 요율이라든지 특약조항이라든지 유예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상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FTA 문제를 먼저 처리했을 경우에 이 나라들이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에서 쌀 협상에 있어서 FTA에 준하는 여러 가지 조항을 가지고 우리에게 압박을 해 올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지금의 시기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시기가 DDA 협상, 쌀 재협상을 마치고 나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몇 개월 그렇게 급해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선거 때 충분한 사후 대책을 세워 놓고 비준동의안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1년 동안 거의 손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소나기식으로 119조 8000억이라고 농민들에게 짜깁기 식으로 발표해 놓고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가의 이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농촌의 표만 의식하는 그러한 국회의원으로 매도하는 이러한 체제가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두고 DDA 협상과 쌀 재협상의 추이를 봐 가면서 이 협상을 마무리 지어 달라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것을 비공개 투표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땃땃이 농민과 국민 앞에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왜 기록을 남기지 못합니까? 어떻게 4당 총무들이 밀실 야합을 해서 이것을 비밀투표 합니까? 뭐가 두려워서 이걸 공개적으로 투표를 못 합니까? 이것은 즉시 다시 결정해서 공개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朴寬用 이제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李龍三 의원 나와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李龍三 議員 강원도 철원·화천·양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출신의 李龍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자리를 함께하신 장관님 여러분!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됩니까? 지금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은 이렇게 서둘러서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표결은 오늘 처리한다면 부결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기를 해서 천천히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지역구를 의정보고를 하면서 순회방문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최소 50대 이상, 60대, 70대 고령층 노인 분들만 계시고 40대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농촌에 남아서 농업을 하면서 농촌을 지키는 결과는 빗만 잔뜩 지고 자식들을 서울에 보내서 공부도 시킬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또 앞으로 진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고민 고민을 해도 대책이 나올 수가 없어서 결국은 농촌을 버리고 다 떠나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면 학교는 굉장히 큰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보낼 학생이 하나 없는 그런 마을도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아마 우리 농촌 모두의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연기되어야 될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FTA 첫 상대국이 잘못 선정되었습니다.

칠레는 몇 번째 안 가는 세계적인 농업대국입니다. 칠레와 우리가 FTA 비준동의안을 체결하면 칠레와 체결한 이후에 많은 농업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FTA 체결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칠레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농업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되

어 있습니다.

농촌 회생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FTA가 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119조 농촌 투자계획은 내용이 없는, FTA를 우선 비준하기 위한 정부의 임시방편적 졸속 정책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10년간 농촌 투자 액수를 다 모아 보면 119조 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더라도 최소 수십조에서 거의 그 금액에 다다릅니다. 그러므로 119조 투자계획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아주 형식적인,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정책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기존 투자 외에 119조를 가사 투자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방안도 연구되거나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또 그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용자사업입니다. 119조 중 대부분의 농민이 용자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갈수록 농촌의 빛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지난 문민정부 때 56조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농촌에 투자했지만 그 금액 중에 거의 대다수가 용자사업이었습니다. 농민들은 결국 용자받아서 투자하고 농촌의 경쟁력이 아주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빛만 지고 만 것입니다. 119조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결국 똑같은 현상만 반복될 것입니다. 또 지금 수립한 119조 투자계획이 盧武鉉 정권 이후 계속 추진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네 번째, 칠레 이후에 줄줄이 FTA 체결 국가가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칠레 비준 이후에 다른 나라의 요구를 우리는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중국 등 농업 대국과 FTA가 체결되면 그때 우리 농촌은 괴멸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일방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오늘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에 부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농민과 농촌이 납득하고 수용할 만한 대책을 제시한 후에야 FTA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자꾸 주장하지 않습니까? 수출품에 고율의 농특세를 부과해서 그 재원을 농촌에

대대적으로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수입 농산품을 전부 북한에 식량 지원 등으로 다 소비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품은 제값을 받고 우리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는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농촌이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연기한 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농촌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서둘러서 졸속으로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더욱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한 후에 17대 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뿐이 아니라 농촌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 생각을 몇 말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깊이 좀 생각하시고 통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모두 열일곱 분, 토론하신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에대한 무기명투표실시요구의건
(홍사덕·김근태 의원 외 54인 발의)

(20시53분)

○議長 朴寬用 이 안건의 표결 방법과 관련하여 洪思德·김근태 의원 외 54인으로부터 무기명투표로 실시하자는 요구와 李正一 의원 외 57인으로부터 기명투표로 실시하자는 요구가 각각 있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이 안건부터 먼저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무기명으로 표결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이 FTA 비준안 동의를 처리하는 데 무기명투표로 하는 방법과 기명투표로 하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것을 먼저 표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투표 준비가 되었으면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89인, 반대 116인, 기권 5인으로서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요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에대하기명투표실시요구의건

(이정일 의원 외 57인 발의)

(20시56분)

○議長 朴寬用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요구는 부결되었으므로 이 안건은 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표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李正一 議員 의석에서 - 표결할 이유가 없지요, 부결되었는데. 의사 진행을 왜 이렇게 하세요!)

(장내 소란)

가만히 계세요. 왜 그렇게 회의 진행 방법도 모르면서 떠들어요?

국회법 제112조 “표결방법”에 관해서 제2항에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세 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것이고, 하나는 기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할 것인지를 문제는 두 개 다 물어봐야 하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무기명으로 하자는 데 대해서는 부결되었기 때문에 기명투표로 하자는 데 대해서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에 부치자는 것입니다.

(○서상섭 의원 의석에서 - 2개 다 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개 다 부결되면 또 다른 방법,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相培 議員 의석에서 - 무기명이 아니면 기명 아닙니까?)

저기에 가서 투표하는 것은 기명이나 무기명이냐…… 다릅니다.

제가 국회법을 검토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의장의 얘기를 믿고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完九 議員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정확하게 현재 표결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신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명투표…… 李完九는 반대를 했다, 찬성을 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기명투표로 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125인, 반대 83인, 기권 10인으로서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요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장내 소란)

여러분들의 요구가 기명투표로 하자고 요구해 놓고 이제 와서 전자투표 얘기를 합니까?

국회법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국회법에는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이것은 일반 안건을 처리할 때의 얘기이고……

(○李正一 議員 의석에서 - 비밀투표나 전광판투표나 그 둘을 물어봤지 누가…… 서로 다른 얘기예요.)

(○윤두환 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전자투표를 하는 데 대해서 찬성한 것이예요.)

(일부 의원 등단)

(○金景梓 議員 단하에서 - 투표로 이름이 나오니까 기명한 것 아니예요. 전광판이 있으면 그것이 기명투표지요.)

가만히 있어 봐요.

(○金景梓 議員 단하에서 -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런 투표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요. 내 설명을 들어요.

(○金景梓 議員 단하에서 -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혼합니다.

(「언제 했어요? 국회를 우롱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내려가세요! 안 내려가면 내가 나갑니다.

(장내 소란)

투표 방법은 전자투표 하는 방식과 투표소에 가서 하는 투표의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표결 방법과 투표함에 가서 투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은 투표함에 가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강아무개라는 이름이 적힌 용지를 받고 여기에 가·부 간에 정함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증거물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과 이름이 없는 곳에 그냥 투표를 하는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李正一 議員 단하에서 - 아니, 그러면 처음에 물어본 것은 무엇을 물어본 것입니까?)

(장내 소란)

아니, 전자투표로 하나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투표로 하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전자투표로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국장! 똑바로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실무자를 데리고 의원들이 왜 그래요?

(장내 소란)

가만히 계세요.

의사국장! 올라와요.

왜 실무자를 붙들고 그래요.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제가 어떤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고 장난을 치느니 하는 용어에 대해서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국회법 제112조제2항의 유권해석이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기 위해서 5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기명투표는 투표용지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같이 명기해서 하는 투표를 기명투표라고 하고, 무기명투표는 이름을 적지 아니하는 가·부 간의 투표만 하는 것을 무기명투표로 구분하는 것으로 국회법 해설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투표하기 이전에 우리 실무자들이 여러 보좌진들하고 투표 방법은 이렇다 하는 것을 몇 차례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장내 소란)

국회가 왜 이렇게 무질서합니까? 가만히 계서 보세요.

때문에 제가 국회법 해설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이 문제를 국회 전문가들과 모여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2분 회의중지)

(22시44분 계속개의)

○議長 朴寬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기명투표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명투표에 대한 저의 해석은 추후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회법을 보시면 제114조에 기명투표는 어떻게 한다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고, 사과의 말씀도 있었고, 저의 불찰도 얘기가 있었기에 그 문제는 정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FTA라고 하는 대단히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찬반이 아주 격렬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정부 측에서도 많은 생각을 다시 한 것으로 이해되고 또 의원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4당 총무와 농촌을 대변하는 의원들, 그 대표성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裴奇雲 의원, 李正一 의원, 이규택 의원, 이희규 의원, 李完九 의원, 金容鈞 의원 등과 자리를 같이하고 논의한 결과 농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정부가 했어야 한다는 말을 제가 정부 측에 전달하고 정부 측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음과 같이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하기로 했습니다.

11일, 내일모레 오후 2시에 농해수위원회를 소집하고 부총리와 농림부장관이 참석해서 농촌 의원들의 농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받고 협의를 다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내일 오후 2시 정부 측과 농촌 의원들

과 각 당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간담회를 먼저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국무총리의 책임 아래에서 농업·농림 단체들과 개별 접촉을 전부 다 시도한다, 이 주일 말까지 모든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쌍방이 노력한다, 이번 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주 초에 투표를 한다,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4당 총무들과 농촌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입니다.

의장으로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주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주 한 주 동안 농해수위원들과 정부 측의 협상을 지켜봐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영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지난 1월 8일날 2월 9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FTA를 처리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안 의원은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뭐를 노력했습니까?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고함소리 없이 FTA가 정리될 수 있도록, 농촌 의원들이나 농민들이 이만하면 흡족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노력을 다 같이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2시49분 산회)

.....
【결의안】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

발의연월일 : 2004. 2. 6.

발 의 자 : 유용대 의원

찬 성 자 : 60인

주 문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개혁으로 위장한 부패세력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기 위해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촉구를 결의한다.

제안이유

검찰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검찰이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야당의원인 한화갑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편파·표적수사이다.

작금의 검찰은 승자의 큰 허물에 눈감고 패자의 작은 잘못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검찰은 “SK를 수사하던 도중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한화갑 의원을 조사했다. 다른 후보는 수사단서가 없기 때문에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궁색하게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건 조사 중 증거나 사실이 현출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세평·풍문·신문기사나 언론보도도 얼마든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 하물며 현재 국민적 의혹 대상인 불법정치자금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공정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을 수호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검찰 본연의 모습이다.

경선자금의 수사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도이다. 2003년 7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자금에 대한 특별기자회견에서 “경선자금은 사실 밝히기가 곤란하다. 실제 경선에 들어가는 홍보·기획 비용은 합법의 틀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밝힐 수가 없다. 경선자금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폐기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증거를 은폐·인멸하였음을 자백했다.

정동영 의원 역시 2000년 민주당 최고위원경선 당시 권노갑 민주당 고문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검찰조사에 불응하여 사법질서를 망가뜨린 전력이 있다. 당시 경선주자였던 김근태 의원은 2000년 경선자금에 관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고백을 하여 기소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2002년 민주당 대선경선 관련해서도 대선 후보경선에 참여했다가 제주·울산 두 지역만을 마치고 경선에서 자진사퇴한 김근태 의원과 비교할 때 16개 시·도지역을 완주한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의원이 적어도 김근태 의원보다도 훨씬 많은 경선자금을 사용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경선과 관련하여 정동영

의원은 16대국회 4년 임기중 3번의 경선을 치른 최다 경선주자였다. 경선자금 수사를 한다면 1차 수사대상은 단연 정동영 의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희정씨가 대우건설로부터 영수증 처리없이 5000 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최근 검찰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아무리 대통령, 자칭 여당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혐의가 드러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외면만 한다면 이를 과연 형평과 정의에 기반을 둔 국민의 검찰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는 한화갑 의원에 대한 편파·표적 수사를 멈추고 2002년 대선후보경선을 끝까지 치루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공정수사를 촉구한다.

국회의원(서청원)석방요구결의안

발의연월일 : 2004. 2. 6.

발 의 자 : 박종희·임인배·박혁규
권태망·심재철·윤두환
이해구·김락기·이양희
박원홍·김용학·심규철
신현태·김동욱·김황식
서상섭·김진재·박시균
김용균·전용학·이규택
이승철·맹형규·전용원
정문화·이상희·황우여
권오을·서정화·백승홍
윤경식 의원 (31인)

주 문

헌법 제44조제2항 및 국회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서청원)의 석방을 요구한다.

제안이유

1. 서청원의원은 2004년 1월 28일 검찰에 의하여 전격 구속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속사유는 서청원의원이 “2002년 11월 초순경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으로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00만 원권 100매 10억 원 상당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2. 검찰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으로부터 서청원의원에게 채권을 주었다는 확인서를 FAX로 받았으며, 서청원의원이 수수한 채권을 사위의 사업자금으로 제공했다는 증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청원의원은 일관되게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수년전부터 사업상 채권거래를 해왔던 사위가 문제의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했던 시점이 2002년 10월이라는 사실은 “서청원의원이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으로부터 11월초순경에 채권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조사내용을 뒤엎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청원의원의 사위는 관련장부와 매입자금을 입증하는 통장사본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제70조제1항) 그러나 서청원의원은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제16대 국회의원의 신분이고,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려진 만큼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서청원의원을 구속에까지 이르게 한 동사건의 담당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자료인, 외국에 체류중인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이 보냈다는 FAX 역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의 경우 또한 상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FAX 한 장을 근거로 서청원의원을 전격 구속하고, 외국에 체류중인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이 귀국하기전까지는 동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속상태가 유지됨으로써 서청원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개원된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저해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회주의가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우리 헌법은 현행범인이 아닌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속 할 수 없게 하였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속된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되도록 규정(헌법 제44조)하여 국회의원의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6.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속된 서청원의원에 대한 석방요구 결의는 결코 정파적

문제가 아니며, 국회준립 차원의 문제입니다. 최소한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이 귀국하여 검찰이 발표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속상태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입법부의 존엄과 권위를 우리들 스스로의 고통과 번민을 수반한 노력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헌법 제44조제2항과 국회법 제28조에 의하여 ‘국회의원(서청원)석방요구결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監査院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97인)

찬성의원(197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 숙 자	강신성일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오 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춘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옥	김 락 기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방 립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성 순	김 성 조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용 환	김 원 기	김 원 길
김 원 응	김 일 윤	김 정 부	김 종 하
김 종 호	김 진 재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회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중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관 용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상 규	박 시 균	박 원 흥	박 인 상
박 종 근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중 응
박 종 희	박 진	박 창 달	박 헌 기
박 혁 규	박 회 태	배 기 선	배 기 운
백 승 흥	서 병 수	서 상 섭	서 정 화
설 송 응	손 회 정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규 철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대 룰	안 동 선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정 규
엄 호 성	오 경 훈	오 세 훈	원 회 룡
유 시 민	유 용 태	유 재 건	유 흥 수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규 택

이 근 진	이 낙 연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배	이 상 회	이 성 현	이 승 철
이 완 구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윤 수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영	이 창 복
이 해 구	이 해 찬	이 협	이 호 응
이 희 규	임 인 배	임 중 석	임 진 출
임 채 정	장 광 근	장 성 원	장 태 완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성 준
조 응 규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한 천
조 희 옥	천 정 배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연 회	최 영 회	최 용 규	최 재 승
추 미 애	하 순 봉	한 충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함 승 회	허 태 열	현 경 대
홍 문 중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창 주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04인)

찬성의원(204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 숙 자	강신성일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오 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춘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옥	김 락 기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방 립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성 순	김 성 조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용 환	김 원 기	김 원 길
김 원 응	김 일 윤	김 정 부	김 종 하
김 종 호	김 진 재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회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중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관 용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상 규	박 시 균	박 원 흥	박 인 흥
박 종 근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중 우
박 종 희	박 진	박 창 달	박 헌 기
박 혁 규	박 회 태	배 기 선	배 기 운
백 승 흥	서 병 수	서 상 섭	서 정 화
설 송 응	손 회 정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규 철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대 룰	안 동 선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정 규
엄 호 성	오 경 훈	오 세 훈	원 회 룡
유 시 민	유 용 태	유 재 건	유 흥 수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규 택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김학송	김형오	김황식	김효석
서정화	설송용	손희정	송광호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목요상	민봉기	박근혜	박금자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박상규	박상천	박상희	박시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박원홍	박인상	박종근	박종완
안동선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박중우	박중용	박종희	박진태
안택수	양승부	양정규	엄호성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섭
오경훈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유시민	유용태	유재건	유홍수	서정화	손희정	송광호	송병대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송훈석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규택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이근진	이낙연	이병석	이부영	안동선	안상현	안택수	양승부
이상배	이상희	이성현	이승철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이완구	이우재	이원창	이윤수	원유철	원희룡	유용태	유재규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해구	이해봉	이해찬	이협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방호
이호웅	이희규	임종석	임진출	이병석	이상배	이상희	이성현
임채정	장광근	장성원	장재식	이승철	이완구	이원창	이원형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이윤성	이윤수	이인기	이재선
정갑윤	정균환	정동채	정문화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주영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우택	이해구	이해봉	이협	이희규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창화	임인배	임진출	장광근	장성원
정철기	정형근	조성준	조웅규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조희욱	정갑윤	정균환	정문화	정범구
천정배	최병국	최선영	최연희	정병국	정의화	정창화	정철기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정형근	조성준	조재환	조정무
하순봉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조한천	최병국	최선영	최연희
함승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최영희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홍사덕	홍재형	황우여	황창주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함승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황우여	황창주		

○의사일정변경동의의견

투표의원(211인)

찬성의원(170인)

강성구	강숙자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룡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무성
김문수	김방림	김병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영선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원길	김일윤	김정부	김종하
김진재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반대의원(37인)

강봉균	김근태	김덕배	김명섭
김부겸	김영춘	김원기	김원웅
김중호	김태홍	김택기	김희선
남궁석	문석호	박병석	배기선
설송용	송영길	신기남	안영근
유시민	유재건	이우재	이종걸
이창복	이해찬	이호웅	임종석
임채정	정동채	정세균	정장선
정진석	조희욱	천정배	최용규
홍재형			
박관용	송석찬	장재식	정우택

기권의원(4인)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

투표의원(173인)

찬성의원(167인)

강성구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룡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무성	김문수	김방림
김병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원길	김일윤
김종하	김진재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황식	김효석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근혜	박금자	박상규	박상천
박상희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박종희	박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손희정	송광호
송병대	송훈석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동선	안상현	안택수	양승부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용태	유재규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방호
이병석	이상배	이성현	이승철
이완구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운수	이인기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주영	이해구
이해봉	이협	이희규	임진출
임태희	장광근	장성원	장재식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균환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의화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조희욱	최병국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함승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홍준표	황우여	

반대의원(1인)

김종호

기권의원(5인)

박관용 안대륜 이한동 정우택
황창주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
법안

투표의원(196인)

찬성의원(196인)

강봉균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원기	김원길	김원웅
김일윤	김종호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금자
박병석	박상규	박상천	박상희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박종희	박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설송웅	손희정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동선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양승부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병석	이부영	이성현	이승철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운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한동	이해봉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협	이호응	이희규	임종석	이재창	이정일	이주영	이해구
임진출	임채정	임태희	장광근	이해봉	이협	이희규	임인배
장성원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임진출	임태희	장광근	장성원
전재희	정갑윤	정균환	정동채	장재식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전재희	정갑윤	정문화	정병국
정우택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우택	정의화	정창화	조웅규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조성준	조정무	조희욱	최병국	최병렬
조웅규	조정무	조한천	조희욱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재승
천정배	최병국	최병렬	최선영	추미애	하순봉	한화갑	함석재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추미애	하순봉	한충수	한화갑	홍준표	황우여	황창주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창주				

반대의원(29인)

강봉균	고진부	김덕배	김부겸
김원웅	김태홍	김택기	김희선
남궁석	문석호	박병석	배기선
송석찬	송영길	신기남	안영근
유시민	유재건	이종걸	이창복
이호응	임종석	임채정	정동채
정세균	정장선	천정배	최용규
홍재형			

기권의원(5인)

김효석	박금자	원희룡	정범구
조한천			

○의사일정변경동의의견

투표의원(189인)

찬성의원(155인)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룡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방림
김병호	김상현	김성조	김영선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원길	김일운
김정부	김종하	김진재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학송	김형오
김황식	나오연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상규	박상천	박시균	박원홍
박종근	박종완	박종용	박종희
박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손희정	송광호	송병대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동선
안상현	안택수	양승부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원유철
유용태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병석	이상배	이성현	이승철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윤수

○고도(古都)보존및정비에관한특별법안

투표의원(182인)

찬성의원(180인)

강성구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만제	김명섭
김병호	김부겸	김성순	김성조
김영선	김영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환	김원기	김일운
김정부	김종필	김종하	김종호
김진재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박근혜	박금자	박병석
박상규	박상희	박시균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용	박종희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서병수 손희정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양승부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오장섭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유재건
 유재규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제 이규택
 이낙연 이만섭 이병석 이부영
 이상배 이상희 이성현 이승철
 이연숙 이완구 이용삼 이우재
 이원형 이인기 이인제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창복 이한동
 이해구 이협 이호웅 이희규
 임종석 임채정 장광근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우택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철기 정형근 조부영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조희욱 주진우 천용택 천정배
 최명헌 최병국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하순봉
 한충수 한화갑 현경대 홍문중
 홍사덕 홍재형 황우여 황창주

기권의원(2인)

강봉균 임진출

김정부 김중필 김중하 김중호
 김진재 김찬우 김창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민봉기 박근혜 박금자
 박병석 박상천 박상희 박세환
 박시균 박인상 박종근 박종완
 박중우 박중용 박중희 박진태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서병수 서상섭 설송웅
 손희정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양승부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오장섭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유한열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제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성현 이승철 이연숙
 이완구 이용삼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한동
 이해구 이협 이호웅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장광근 장성원 장재식 장태완
 전용원 전재희 정갑윤 정균환
 정동채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우택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조부영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주진우 천용택 천정배
 최명헌 최병국 최선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한충수 한화갑 함승희 허태열
 현경대 홍문중 홍재형 황창주

(김희선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투표의원 208인, 찬성의원 208인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208인)

찬성의원(208인)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흥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영선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원기 김원길 김원웅 김일윤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209인)

찬성의원(209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신성일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회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만 제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방 립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성 순	김 성 조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용 환	김 원 기	김 원 길
김 원 웅	김 일 윤	김 정 부	김 중 필
김 종 하	김 종 호	김 진 재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종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상 천	박 상 회	박 세 환	박 시 균
박 인 상	박 종 근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종 웅	박 종 희	박 진	박 창 달
박 현 기	박 혁 규	박 회 태	배 기 선
서 병 수	서 상 섭	설 송 웅	손 희 정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기 남	신 영 국	신 영 균	신 현 태
심 규 철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대 룬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양 승 부	양 정 규	엄 호 성	오 경 훈
오 장 섭	원 유 철	원 회 룡	유 시 민
유 용 태	유 재 건	유 재 규	유 한 열
유 흥 수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근 진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방 호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성 현	이 승 철
이 연 속	이 완 구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원 형	이 윤 성	이 윤 수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주 영	이 창 복
이 한 동	이 해 구	이 협	이 호 웅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채 정	임 태 회	장 광 근	장 성 원

장 재 식	장 태 완	전 용 원	전 재 희
정 갑 윤	정 균 환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웅 규
조정 무	조 한 천	주 진 우	천 정 배
최 명 현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승	추 미 애	하 순 봉
한 충 수	한 화 갑	함 승 희	허 태 열
현 경 대	홍 문 종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창 주			

○入養促進및節次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03인)

찬성의원(203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신성일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회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만 제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방 립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성 순	김 성 조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정 부
김 중 필	김 중 하	김 종 호	김 진 재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종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상 천	박 상 회	박 세 환
박 시 균	박 인 상	박 종 근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종 웅	박 종 희	박 창 달
박 현 기	박 혁 규	박 회 태	배 기 선
서 병 수	서 상 섭	설 송 웅	손 희 정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규 철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대 룬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양 승 부
오 경 훈	오 장 섭	원 유 철	원 회 룡
유 시 민	유 용 태	유 재 건	유 재 규
유 한 열	유 흥 수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근 진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방 호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성 현
이 승 철	이 연 속	이 완 구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원 형	이 윤 성
이 윤 수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주 영
이 창 복	이 한 동	이 해 구	이 협
이 호 웅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채 정	임 태 회	장 광 근
장 성 원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성현
이승철	이연숙	이완구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한동	이해구	이협
이호웅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임태희	장광근
장성원	장재식	장태완	전용원
전재희	정갑윤	정균환	정동채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우택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조부영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주진우	천정배	최명현	최병국
최선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한충수	한화갑
함승희	허태열	현경대	홍문중
홍재형	황우여	황창주	

(강창희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투표의원 203인, 찬성의원 203인임)

박상희	박세환	박시균	박인상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박종희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배기선	서병수	서상섭	설송웅
손희정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양승부	오경훈	오세훈	오장섭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유한열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성현	이승철	이연숙
이완구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한동	이해구
이해봉	이협	이호웅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임태희	장광근	장성원	장재식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균환	정동채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우택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주진우	천정배
최명현	최병국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한충수	한화갑
함승희	허태열	현경대	홍재형
황우여	황창주		

○障碍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02인)

찬성의원(202인)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영선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원기	김원길
김원웅	김정부	김종필	김중하
김종호	김진재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민봉기
박근혜	박금자	박병석	박상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

투표의원(200인)

찬성의원(184인)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조	김영선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원기	김원길	김원웅
김정부	김종필	김종하	김종호
김진재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황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민봉기	박근혜
박금자	박병석	박상규	박시균
박인상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박종희	박현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서병수
서상섭	설송웅	설훈	손희정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오경훈
오세훈	오장섭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유재건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제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성현
이승철	이연숙	이완구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한동
이해구	이해봉	이협	이호웅
임진출	임채정	임태희	장광근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우택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조부영	조성준	조웅규	조정무
조한천	조희욱	주진우	천정배
최병국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재승	하순봉	한화갑	허태열
현경대	홍재형	황우여	황창주

반대의원(9인)

고진부	김경천	김성순	김효석
박상희	장재식	조재환	한충수
함승희			

기권의원(7인)

김경재	유재규	이정일	이희규
최명헌	최용규	추미애	

(나오연·정의화 의원 버튼 미조작, 황창주 의원 버튼 조작 착오. 실제 투표의원 200인, 찬성의원 184인, 기권의원 7인임)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투표의원(198인)

찬성의원(178인)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재	김경천	김근태	김기배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원기	김원길	김원웅	김정부
김종필	김종호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학송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목요상	문석호	민봉기
박금자	박병석	박상규	박상천
박세환	박시균	박인상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박진
박창달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서상섭	서정화	설송웅
설훈	손희정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안경률	안대륜	안상수
안상현	양승부	오장섭	원유철
원희룡	유용태	유재규	윤경식
윤두환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래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성현	이승철	이연숙
이완구	이용삼	이원창	이윤성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창복	이한동
이해구	이해봉	이협	이호웅
이희규	임인배	임진출	임채정
장광근	장성원	장영달	장재식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범구	정병국
정우택	정의화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조부영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주진우 천정배 최명헌 최병국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현경대 홍재형
 황우여 황창주

반대의원(7인)

김형오 박상희 박헌기 안영근
 이강두 정문화 조희욱

기권의원(13인)

김광원 김기춘 도종이 서병수
 심재철 오경훈 오세훈 유시민
 유재건 이경제 이우재 이종걸
 임태희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양정규
 오경훈 오세훈 오장섭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유재건 유재규
 유한열 윤경식 윤두환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근진 이낙연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성현 이승철 이연숙 이완구
 이용삼 이우재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한동 이해구 이해봉 이협
 이호웅 이희규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장광근 장성원 장영달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균환 정동채 정몽준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우택
 정장선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조부영 조성준 조웅규
 조정무 조한천 조희욱 주진우
 천정배 최병국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재형 황우여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

조약비준동의안

투표의원(196인)

찬성의원(196인)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흥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철현
 권태망 김경제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락기 김명섭
 김무성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영선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원기 김원길 김원웅
 김정부 김종필 김종하 김종호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민봉기 박근혜
 박금자 박병석 박상규 박상천
 박상희 박세환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종웅 박종희 박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서병수 서상섭
 서정화 설훈 손희정 송광호
 송병대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동선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

약비준동의안

투표의원(192인)

찬성의원(192인)

강성구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흥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철현 권태망
 김경제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영선 김영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원기
 김원길 김원웅 김종필 김종하
 김종호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민봉기
 박근혜 박금자 박병석 박상규

박상천	박상희	박시균	박원홍	김용갑	김용균	김원기	김원길
박인상	박종용	박종희	박진	김원웅	김정부	김종필	김종하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김종호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배기선	배기운	서병수	서상섭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서정화	설훈	손희정	송광호	김형오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신기남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맹형규	문석호	민봉기	박근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박금자	박병석	박상규	박상천
안대륜	안동선	안상수	안상현	박상희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안영근	양정규	오경훈	오세훈	박종용	박종희	박진	박창달
오장섭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유재건	유재규	유한열	윤경식	배기운	서병수	서상섭	서정화
윤두환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설훈	손희정	송광호	송병대
이강두	이강래	이경제	이근진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이낙연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이상득	이상배	이승철	이연숙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동선
이완구	이용삼	이우재	이원형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양정규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오경훈	오세훈	오장섭	원유철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원희룡	유시민	유재건	유재규
이한동	이해봉	이협	이호웅	유한열	윤경식	윤두환	윤영탁
이희규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장광근	장성원	장영달	장태완	이경제	이근진	이낙연	이방호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정균환	정동채	정몽준	정문화	이승철	이연숙	이완구	이용삼
정범구	정병국	정우택	정장선	이우재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조부영	조성준	조웅규	조정무	이주영	이창복	이한동	이해봉
조한천	조희욱	주진우	천용택	이협	이호웅	이희규	임종석
천정배	최병국	최선영	최연희	임진출	임채정	장광근	장성원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장영달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하순봉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전재희	정갑윤	정균환	정동채
허태열	현경대	홍재형	황우여	정몽준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우택	정장선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조부영	조성준
				조웅규	조정무	조한천	조희욱
				주진우	천용택	천정배	최병국
				최선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재형
				황우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가입동의안
투표의원(193인)

찬성의원(193인)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철현
권태망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기재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락기
김명섭	김무성	김방립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영선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
의안

투표의원(178인)

찬성의원(178인)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철현	권태망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기재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명섭	김무성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성조	김영선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학
김원기	김원길	김종필	김중하
김종호	김진재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원
김형오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금자	박병석
박상규	박세환	박시균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박종희	박진
박현기	박혁규	배기선	배기운
서병수	서상섭	서정화	설훈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대륜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양정규
오경훈	오세훈	오장섭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유재건	유재규
윤경식	윤두환	이강두	이강래
이규택	이낙연	이부영	이상희
이승철	이연숙	이용삼	이우재
이운성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한동
이해구	이해봉	이호웅	이희규
임인배	임진출	임채정	장광근
장성원	장영달	장재식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균환	정동채	정몽준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우택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조성준	조웅규	조정무
조한천	조희욱	주진우	천용택
최정배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한충수	한화갑	추석재	함승희
허태열	현경대	홍문	홍사덕
홍재형	황창주		

(배기운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투표의원 178인, 찬성의원 178인임)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

투표의원(194인)

찬성의원(194인)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철현	권태망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기재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명섭	김무성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성조	김영선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학	김용환	김용환	김원기
김원길	김원웅	김종필	김중하
김중호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원	김형오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금자	박병석	박상규
박상희	박시균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박종희	박진	박창달
박현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서병수	서상섭	서정화
설훈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대륜	안동선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양정규	오경훈
오세훈	오장섭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유재건	유재규	윤경식
윤두환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희	이성현	이승철	이연숙
이용삼	이우재	이운성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한동	이해구	이해봉
이협	이호웅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장광근
장성원	장영달	장재식	장태완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몽 준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성 준 조 응 규 조 정 무 조 한 천
 조 희 욱 주 진 우 천 용 택 천 정 배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용 규
 최 재 승 추 미 애 하 순 봉 한 충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함 승 희 허 태 열
 현 경 대 홍 문 종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창 주

(김경재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투표의원 194인, 찬성의원 194인임)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에관한추가적정서비준동의안

투표의원(197인)

찬성의원(195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신성일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락 기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방 립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성 조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용 환 김 원 기 김 원 길 김 원 응
 김 종 필 김 종 하 김 종 호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원 김 황 식 김 호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종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관 용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상 규 박 상 희 박 세 환 박 시 균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종 응 박 종 희
 박 진 박 창 달 박 혁 규 박 희 태
 배 기 선 배 기 운 서 병 수 서 상 섭
 서 정 화 설 훈 손 희 정 송 광 호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기 남
 신 영 국 신 영 균 신 현 태 심 규 철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대 룰
 안 동 선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양 정 규 오 경 훈 오 세 훈 오 장 섭
 원 유 철 원 희 룡 유 시 민 유 재 건
 유 재 규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규 택 이 근 진 이 낙 연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희
 이 성 현 이 승 철 이 연 숙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윤 성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중 결 이 주 영 이 창 복
 이 한 동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협
 이 호 응 이 희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채 정 장 광 근 장 성 원
 장 영 달 장 재 식 장 태 완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성 준 조 응 규 조 정 무
 조 한 천 조 희 욱 주 진 우 천 용 택
 천 정 배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용 규 최 재 승 추 미 애 하 순 봉
 한 충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함 승 희
 허 태 열 현 경 대 홍 문 종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창 주

기권의원(2인)

김 형 오 박 헌 기

○대한민국과화학무기금지기구간의화학무기금지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투표의원(200인)

찬성의원(200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락 기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방 립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성 조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용 환 김 원 기 김 원 길
 김 원 응 김 종 필 김 종 하 김 종 호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원 김 형 오 김 황 식
 김 호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종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문석호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김용환	김원기	김원길	김원웅
박금자	박병석	박상규	박상희	김진재	김학송	김희선	김도종
박세환	박시균	박원홍	박종완	맹형규	문석호	민봉기	박관용
박종우	박종웅	박종희	박진	박근혜	박병석	박상규	박원홍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박종근	배기선	서병수	서정화
배기선	배기운	서병수	서상섭	설송웅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서정화	설송웅	설훈	손희정	신계륜	신기남	신영균	신현태
송광호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심재철	안영근	안택수	원희룡
신기남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유재건	유한열	유홍수	윤여준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이강두	이강래	이부영	이상희
안대륜	안동선	안상수	안상현	이성현	이우재	이윤성	이종걸
안영근	양정규	오정훈	오세훈	이한동	이해봉	이해찬	이호웅
오장섭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장광근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유한열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정문화
윤경식	윤두환	윤영탁	윤철상	정의화	정장선	조희욱	천용택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천정배	최병국	최병렬	최용규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병석	함승희	홍문종	홍사덕	홍재형
이부영	이상득	이상희	이성현	황우여			
이승철	이연숙	이용삼	이우재	반대의원(116인)			
이윤성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강성구	강운태	강창희	고진부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구종태	권기술	권오을	권태망
이한동	이해구	이해봉	이협	김경재	김광원	김락기	김방림
이호웅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옥두
임진출	임채정	장광근	장성원	김용갑	김용균	김일운	김정부
장영달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김종필	김종하	김찬우	김충조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몽준	김태식	김택기	김학원	김황식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우택	김효석	나오연	목요상	박금자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창화	박상천	박시균	박인상	박종완
정철기	정형근	조성준	조웅규	박종우	박진	박헌기	박혁규
조정무	조한천	조희욱	주진우	박희태	배기운	서상섭	설훈
천용택	천정배	최병국	최연희	손희정	송광호	송훈석	신영국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심규철	심재권	안경률	안대륜
하순봉	한승수	한충수	한화갑	안동선	안상현	양승부	양정규
함석재	함승희	현경대	홍문종	오경훈	오세훈	오장섭	원유철
홍사덕	홍재형	황우여	황창주	유용태	유재규	윤두환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경재	이규택
				이낙연	이방호	이병석	이상배
				이연숙	이완구	이용삼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창	이정일
				이해구	이협	이희규	임인배
				임진출	장성원	장재식	전용원
				전재희	정갑윤	정균환	정몽준
				정우택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조성준	조순형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주진우	최명현

○대한민국정부와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대한무기명투표실시요구

투표의원(210인)

찬성의원(89인)

강봉균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고홍길	권영세	권철현	김근태
김기배	김기재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영춘

최 선 영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재 승
 추 미 애 하 순 봉 한 충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허 태 열 현 경 대 황 창 주
기권의원(5인)
 김 형 오 박 창 달 윤 경 식 조 응 규
 한 승 수

○대한민국정부와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대한기명투표실시요구

투표의원(218인)

찬성의원(125인)

강 성 구 강 운 태 강 창 희 고 진 부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오 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동 욱
 김 락 기 김 방 립 김 상 현 김 성 순
 김 성 조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일 윤 김 정 부 김 종 필
 김 종 하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황 식
 김 효 석 나 오 연 남 경 필 목 요 상
 박 금 자 박 상 천 박 시 균 박 인 상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종 희 박 헌 기
 박 혁 규 박 희 태 배 기 운 서 정 화
 설 훈 송 광 호 송 훈 석 신 영 국
 신 영 균 심 규 철 심 재 권 안 경 룰
 안 대 룰 안 동 선 안 상 현 안 택 수
 양 승 부 오 경 훈 오 세 훈 오 장 섭
 원 유 철 유 용 태 유 재 규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경 재 이 규 택 이 낙 연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배 이 연 숙 이 완 구
 이 용 삼 이 윤 수 이 인 기 이 인 체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주 영 이 해 구
 이 협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진 출
 장 성 원 장 재 식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균 환 정 몽 준
 정 병 국 정 우 택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순 형 조 한 천 주 진 우 최 명 현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재 승 추 미 애 하 순 봉 한 충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허 태 열 현 경 대
 황 창 주

반대의원(83인)

강 봉 균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재 섭

고 흥 길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만 제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검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용 환 김 원 응 김 진 재
 김 형 오 김 희 선 도 중 이 맹 형 규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근 혜 박 병 석
 박 상 규 박 원 흥 박 종 근 배 기 선
 서 병 수 설 송 응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신 계 룡 신 기 남 심 재 철
 안 영 근 원 희 룡 유 시 민 유 재 건
 유 한 열 유 흥 수 윤 여 준 이 강 두
 이 강 래 이 부 영 이 상 희 이 성 현
 이 우 재 이 윤 성 이 재 오 이 종 결
 이 해 봉 이 해 찬 이 호 응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태 희 장 광 근 장 영 달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문 화 정의화
 정 장 선 조 희 욱 천 용 택 천 정 배
 최 병 렬 최 용 규 함 승 희 홍 문 중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우 여

기권의원(10인)

김 문 수 박 병 윤 박 진 박 창 달
 서 상 섭 손 희 정 신 현 태 조 응 규
 조 재 환 한 승 수

○出席議員(252人)

강 봉 균 강 성 구 강 숙 자 강신성일
 姜 雲 太 姜 仁 燮 姜 재 섭 姜 昌 熙
 高 珍 富 高 興 吉 具 鍾 泰 權 琪 述
 권 영 세 권 五 乙 권 哲 賢 權 泰 望
 金 景 梓 金 敬 天 金 光 元 金 근 태
 金 杞 培 金 기 재 金 洪 春 金 덕 규
 金 德 龍 金 덕 배 金 東 旭 金 락 기
 김 만 제 김 명 섭 金 武 星 金 文 洙
 金 芳 林 金 秉 浩 金 부 검 金 상 현
 金 聖 順 金 성 조 金 성 호 金 映 宣
 김 영 춘 김 영 환 金 玉 斗 金 容 甲
 金 容 鈞 金 龍 學 金 龍 煥 金 원 기
 金 元 吉 金 龍 學 金 龍 煥 金 일 윤
 김 정 숙 金 鍾 泌 金 鍾 河 金 宗 鎬
 金 鎭 載 金 燦 于 金 忠 兆 金 台 植
 김 태 흥 김 택 기 金 鶴 松 金 學 元
 김 형 오 김 흥 일 金 晃 植 金 孝 錫
 김 희 선 나 오 연 南 景 필 南 궁 석
 都 鍾 伊 孟 亨 奎 孟 목 요 孟 문 석

민박	기석	박용	寬用	朴權	惠	朴錦	子
박병	박석	박윤	寬用	박상	규	朴相	千
박相	熙	박世	煥	박시	균	朴源	弘
박仁	相	박鍾	根	박鍾	浣	朴宗	雨
朴鍾	雄	박종	희	박	진	박창	달
朴憲	基	박혁	규	박	太	배기	선
裴奇	雲	白承	弘	서병	수	서상	섭
徐廷	和	徐清	源	설송	용	薛	勳
손희	정	송광	호	宋丙	大	송석	찬
송영	길	송훈	석	신계	륜	송신	기
申榮	國	申榮	均	신현	대	심규	철
沈載	權	심재	철	안정	를	안대	륜
安東	善	安商	守	安相	賢	안영	근
안택	수	安梁	承	梁正	圭	嚴虎	聲
오경	훈	오세	훈	오장	섭	元裕	哲
원희	룡	유시	민	劉容	泰	유재	건
柳在	珪	柳漢	烈	柳興	洙	윤경	식
윤두	환	尹汝	雋	尹榮	卓	尹鐵	相
尹漢	道	李康	斗	이강	래	李敬	在
이규	택	李根	鎭	이부	영	이상	득
李方	鎬	이병	석	이성	헌	이승	철
李相	培	李祥	羲	李龍	三	이우	재
李嫵	淑	李完	九	李允	盛	李允	洙
李元	昌	이원	형	李在	善	李在	五
李仁	基	이인	제	이중	길	李柱	榮
李在	昌	李正	一	李漢	東	李海	龜
이창	복	李漢	久	李漢	東	李海	龜
이해	봉	이해	찬	李協	石	이호	웅
이희	규	林仁	培	임중	석	林鎭	出
임채	정	任太	熙	張光	根	張誠	源
장영	달	張在	植	張泰	玩	田塔	源
진용	학	진재	희	정갑	운	鄭均	桓
정동	영	정동	채	정몽	준	정문	화
정범	구	정병	국	정세	균	鄭宇	澤
정의	화	정장	선	鄭鎭	碩	정창	화
鄭哲	基	鄭亨	根	趙富	英	조성	준
趙舜	衡	曹雄	奎	趙在	煥	조정	무
趙漢	天	曹喜	旭	朱鎭	吁	천용	택
천정	배	崔明	憲	崔炳	國	崔秉	烈
崔善	榮	崔鉛	熙	崔榮	熙	최용	규
최재	승	秋美	愛	河舜	鳳	韓昇	洙
韓忠	洙	韓和	甲	咸錫	宰	咸承	熙
許泰	烈	玄敬	大	홍문	중	洪思	德
홍재	형	洪準	杓	황우	여	黃昌	柱

이원성 全甲吉 玄勝一

○出席國務總理및國務委員

국무총리	高建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金振杓
외교통상부장관	潘基文
법무부장관	康錦實
행정자치부장관	許成寬
문화관광부장관	李滄東
농림부장관	許祥萬
보건복지부장관	金祥中
노동부장관	權奇洪

○出席政府委員

재정경제부차관	金光琳
국방부차관	俞普善
행정자치부차관	金住炫

【報告事項】

○議案提出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대안)

(2월5일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장 제출)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

(2월6일 유용태 의원 외 60인 발의)

2월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대안)

(2월6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국회의원(서청원)석방요구결의안

(2월6일 박중희·임인배·박혁규·권대망·심재철·윤두환·이해구·김락기·이양희·박원홍·김용학·심규철·신현대·김동욱·김황식·서상섭·김진재·박시균·김용균·전용학·이규택·이승철·맹형규·전용원·정문화·이상희·황우여·권오을·서정화·백승홍·윤경식 의원 발의)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안

(2월7일 정부 제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간도협약의원천적무효확인에관한결의안

(2월7일 김원웅·송영길·황창주·박명환·유시민·김희선·김명섭·이부영·송광호·서상섭·안상수·김성호·신기남·손희정·이창복·유재건·송석찬·장영달·천용택 의원 발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하겠음

以北5道에關한特別措置法改正法律案(민봉기 의원 대

○請暇議員(3人)

표발의)

(2월7일 민봉기·김명섭·정창화·황우여·김용학·박시균·김종호·강창희·전용학·송광호 의원 발의)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

(2월9일 박종희·맹형규·이승철·권오을·조웅규·이재오·박세환·이상희·권기술·강창희·이규택·윤두환·심재철·심규철·신현대·임인배·권태망·박혁규·김진재·박시균·김학송·안경률 의원 발의)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

(2월9일 유용태 의원 외 60인 발의)

○議案審査

監査院法中改正法律案

(1월17일 정부 제출)

(원안의결)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조웅규 의원 대표발의)

(2003년5월6일 조웅규·권철현·윤경식·박희태·김부겸·신현대·장광근·도종이·이정일·이인제·이재선·김용학·박주천·한승수·임인배·이원형·안경률·이상득·정의화·양정규·이원창·김윤식·안상수·강창성·박명환·홍사덕·이윤성·김황식·박세환·심재철·박진·김중하·김덕룡·김정숙·김운용·최병렬·이인기·유홍수·김성조·박원홍·원희룡·박양수·서병수·이미경·박시균·김종호·이성현·이한동·주진우·권기술·박승국·김경천·서청원·이용삼·홍문중 의원 발의)

(수정의결)

이상 2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2003년5월31일 정부 제출)

대한민국과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2003년5월31일 정부 제출)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에관한추가정서비준동의안

(2003년10월2일 정부 제출)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가입동의안

(2003년8월28일 정부 제출)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
(이상 2건 2003년8월9일 정부 제출)

대한민국과화학무기금지기구간의화학무기금지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2000년9월28일 정부 제출)

(이상 7건 원안의결)

이상 7건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보고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

(2003년12월24일 정부 제출)

(원안의결)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심규철 의원 발의)

(2003년6월12일 심규철 의원 외 34인 발의)

(수정의결)

이상 2건 국방위원장 보고

고도(古都) 보존및정비에관한특별법안(김일윤 의원 대표발의)

(2001년11월12일 김일윤·김학원·정진석·이협·임진출·강신성일·고홍길·심규철·정병국·박종용·남경필·신영균·현경대·신기남·강성구·정재문 의원 외 143인 발의)

(수정의결)

문화관광위원장 보고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2003년11월8일 김홍신·유시민·김명섭·김성순·김부겸·안영근·김경천·조성준·심재권·이우재 의원 발의)

入養促進및節次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2001년10월24일 김홍신·심규철·정병국·김부겸·김원웅·윤여준·심재권·원희룡·김희선·오세훈·권기술·송영길·김용학·신기남·김성순·이종걸·박인상·김경천·김태홍 의원 외 1인 발의)

障碍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유재건 의원 대표발의)

(2003년10월24일 유재건·김근태·김성호·김영환·김원기·박양수·설훈·송영길·오세훈·이근진·이인제·이창복·임종석·조웅규·김운용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의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김황식 의원 발의)

(2003년8월20일 김황식 의원 외 18인 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 의원 대표발의)

(2003년9월16일 이원형·이규택·장성원·박
명환·박주천·임인배·김명섭·박시균·황
우여·김만제·이윤성·강재섭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김명섭 의원 대
표발의)

(2003년11월7일 김명섭·이재오·이용삼·김
찬우·권기술·김성순·이원형·조희욱·안
영근·설송웅·박시균·박상희·민봉기·남
궁석·김홍신 의원 발의)

(이상 3건 대안폐기의결)

이상 6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이강두 의원 대표발의)

(2003년9월22일 이강두·이한구·이원형 의원
외 145인 발의)

(수정의결)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김태식
의원 대표발의)

(2002년10월21일 김태식·최명현·정균환·문
희상·추미애·김덕규·장재식·정동채·김
충조·박상규·박병석·배기선·박주선·이
창복·유용태·이정일·이낙연·김기재·한
화갑·최영희·박양수·이재정·배기운·유
재규·박상희·송석찬·정철기·고진부·장
봉균·이강래·조재환·최선영·정장선·곽
치영·장영달·이훈평·김효석·정세균·조
배숙·이희규·전갑길·김영진·김영환·최
재승·김상현·이근진·장성원·이미경·문
석호·김옥두·조한천·이용삼·이종걸·최
용규·허운나·김명섭·김운용·김태홍·김
경천·설훈·강운태·안동선·남궁석·설송
웅·천용택·송영길·천정배·조성준·김홍
일·유재건·김방림·김성순·강성구·김윤
식·송훈석·송영진·김화중·이협·김영
배·함승희·정동영·김근태·정범구·이호
웅·신기남·이윤수·박종우·윤철상·심재
권·하순봉·박희태·양정규·주진우·권오
을·서병수·김동욱·오장섭·이우재·박종
근·김원웅·권기술·현경대·정창화·이상
배·유홍수·윤영탁·김학송·박명환·권철
현·정문화·김찬우·이재오·윤한도·안택
수·김락기·이양희·신현대·김부겸·이재
선·이부영·김성조·박세환·이상희·황우
여·김광원·김희선·강창성·백승홍·이승
철·박진·오세훈·박주천·손희정·정의

화·엄호성·이주영·황승민·박승국·이방
호·김병호·안경률·강신성일·심재철·이
원창·이원형·나오연·박시균·원희룡·김
종하·정형근·고홍길·이인기·신경식·박
현기·조정무·권영세·강인섭·김일윤·서
정화·신영국·이강두·임진출·김홍신 의원
발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2001년10월12일 김원웅·김홍신·안영근·오
세훈·정인봉·김희선·장영달·이창복·김
영춘·이부영·박재욱·장성민·서상섭·안
상수·김근태·심규철·김용학·이미경·원
희룡·심재권·조정무·송영길·이재정·김
태홍·김경천·조용규·정범구·정병국·엄
호성·김성호·김성순·주진우·김영환·곽
치영·윤경식·윤두환·이근진·이주영·이
인기·김민석·김영진·정장선·송훈석·김
충조·박명환·윤여준·김화중·정대철·박
양수·송석찬·남경필·이종걸·김호일·이
호웅·임종석·배기선·설훈·이방호·김부
겸·하순봉·장성원·김옥두·유재건·정형
근·김덕룡·추미애·박주선·이강래·유성
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의결)

함평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이낙연 의원 발의)

(2000년8월4일 이낙연 의원 외 31인 발의)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사상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안**(김충조 의원 대표발의)

(2001년4월6일 김충조·김경재·정철기·김옥
두·원유철·전갑길·김덕규 의원 외 33인 발
의)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
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2001년6월2일 배기운·곽치영·김경재·김덕
배·김충조·김태식·김효석·박용호·박주
선·신영국·이강래·이근진·이낙연·전갑
길·정균환·정범구·조한천 의원 외 22인 발
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
복등에관한법률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2001년9월6일 김원웅·김홍신·안영근·오세
훈·김희선·장영달·이창복·김영춘·이부
영·박재욱·장성민·서상섭·심규철·김용

학·원희룡·심재권·조정무·송영길·이재정·김태홍·김경천·조용규·정병국·김성호·엄호성·김성순·윤두환·김영환·장성원·이호웅·윤한도·임종석·박명환·설훈·이방호·장정언·고진부·곽치영·전갑길·정철기·이성현·이상배·정범구·박용호·이종걸·김덕배·김충조 의원 외 1인 발의)

(이상 4건 대안폐기의결)

이상 6건 과거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위원장 보고

○請願提出

사회보호법폐지에관한청원

(2004년2월6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4 대영앤스빌Ⅱ 1103호 조석영 외 316인으로부터 정범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要求書提出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에대한무기명투표실시요구서

(2003년12월30일 홍사덕·김근태 의원 외 54인 제출)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에대한기명투표실시요구서

(2월9일 이정일 의원 외 57인 제출)

○書面質問書提出

국가정보원의통화사실확인자료요청및제공받은실적에 관한질문서

(2월6일 권영세 의원 제출)

○書面答辯書提出

신공항고속도로의램프진·출입방식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2월5일 정부 제출)

자료제출요구불응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소방방재청대구유치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2건 2월6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